

진보네트워크센터 계간지
정보운동 액트온 | ACT ON

정보운동 액트 ACT



저작권 삼진 아웃제?
삼진 아웃!

정보운동액트온 | **Act On**

저작권 삼진아웃제? 삼진 아웃!

통권 제6호 | 2009년 제2호

코드 : Exodus

히브리인들이 번성하자 이집트의 왕은 히브리인들에게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서 여자 아이는 살게 하고 남자 아이는 강물에 던지게 합니다. 아주 잘 생긴 아들을 낳은 어느 어머니가 그를 살리고자 아들을 나일강의 풀숲에 둡니다. 이 아이가 이집트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어 공주는 아이를 양자로 삼고 이름을 모세라 짓습니다. 청년이 된 모세는 어느 날 동족인 히브리인들이 박해 받는 참상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는 이집트 노동감시자를 살해하고 광야로 도피하게 됩니다. 도피하는 동안 여호와로부터 히브리 인들을 이끌라는 계시를 받은 모세는 히브리인들과 함께 이집트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80년간의 여정 - Exodus를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인 출애굽기입니다.

박해를 피하여 떠나는 고난의 여정을 흔히 엑소더스라 표현합니다. 한국 정부의 감시와 억압에 대해 엑소더스를 감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의 엑소더스와 다른 점은 공산하고 공유하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지도자도, 신적 계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의 땅 역시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로 하여금 웹 상에 게시된 저작권 위반 내용을 단속하게 합니다. 외국의 웹메일 서비스에 대해서 검찰은 메일 내용을 입수했노라 의기양양 합니다. 국정원은 인터넷 회선에 감청장치를 물려놓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를 낱알이 파헤칩니다. 자본은 보다 나은 서비스라 광고하며 인터넷 이용자 개개인의 사이트 이용 패턴, 광고 클릭 등을 분석합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땅에 오려는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지문을 찍게 하고, 이 땅을 나가려는 이들에게도 강제적으로 지문을 찍게 하려 합니다.

죄어오는 억압들을 모두 거부하는 삶을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모든 감시와 억압에는 그것의 창안자와 후원자가 붙인 효율과 안전과 준법의 딱지가 붙어있습니다. Act On은 그 효율과 안전과 준법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저들에게 되묻고자 합니다. 그러한 감시와 억압 없이도 즐거이 나누며 함께 살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엑소더스는 필요 없습니다.

 picotera@jinbo.net

계간 정보운동 액트는 ActOn
통권 제6호 | 2009년 제2호

발행일 2009년 9월 21일
등록일 2003년 8월 1일

발행처 진보네트워크센터
발행인 이종희
편집인 라론
편집 라론
표지 명야평
인쇄 천광문화사

등록번호 서울 바03553
주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 우리타워 3층
홈페이지 <http://act.jinbo.net>
이메일 della@jinbo.net
전화 02-774-4551
ISSN 1976-1953

차례

통권 제6호 | 2009년 제2호

저작권 삼진아웃제? 삼진 아웃!

02 코드 : Exodus

▶ Section 01. 저작권 삼진아웃제? 삼진 아웃!

- 08 ‘삼진아웃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합리적 조화? / 황성기
- 12 저작권법 · 삼진아웃제를 비판한다 / 김지성
- 20 저작권제도 10문 10답 / 김낙호
- 27 [만화] 저작권의 요정 / Curtis

▶▶ Section 10. 전자여권과 권력의 문제

- 30 전자여권과 권력의 문제 / 김승욱
- 38 항의서한: 외국인 거주자 및 여행자에 대한 지문검사 계획에 부쳐 / 김승욱
- 42 [만화] 여권이 필요했던 김 모 씨의 심란한 새해 / 진보네트워크센터, 도단이

▶▶▶ Section 11. 이슈

- 46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동이용 실천선언문
- 56 ‘사무라이 조’와 임시조치 / 라론
- 62 퍼블릭 도메인과 2차 창작 / 텡야핑
- 66 大監視時代대감청시대, 넷트향예술! / 김승욱
- 72 악착같아라, 정부의 정보 폭식 / 오병일
- 76 한없이 불투명에 가까운 ‘감청의 투명화’ / 장여경
- 80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가라 / 홍지

Section 01.

저작권 삼진아웃제? 삼진 아웃!

- _00001. '삼진아웃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합리적 조화? / 황성기
- _00010. 저작권법 · 삼진아웃제를 비판한다 / 김지성
- _00011. 저작권제도 10문 10답 / 김낙호
- _00100. [만화] 저작권의 요정 / Curtis

‘삼진아웃제’ :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합리적 조화?

황성기(한양대학교 법학교수)

프랑스 의회는 2009년 5월 19일 소위 ‘저작권 위반 삼진아웃제’를 포함하고 있는 「인터넷상 창작물의 배포와 보호를 위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인터넷상 창작물의 배포와 보호를 위한 법률」 중에서 삼진아웃제에 해당하는 조항으로는 동 법률 제5조 및 제11조를 들 수 있는데, 제5조의 경우에는 인터넷상의 저작물배포와 권리의 보호를 위한 감독관청의 신설에 관한 것으로서, 감독관청은 저작권 또는 저작권접권이 있는 작품이나 대상이 적법하게 제공되도록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와, 인터넷 접속자가 접속과 관련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이를 경고하고 행정제재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절차를 담당하는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그리고 동 법률 제11조는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감시의무를 규정하고, 인터넷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어떤 사안에 대하여 그 자를 면책할지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제재조치로는 2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서비스 접속차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프랑스 헌법위원회(법률의 위헌 여부를 법률 공포 이전에 심사하는 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함)는 2009년 6월 10일 「인터넷상 창작물의 배포와 보호를 위한 법률」상의 삼진아웃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인터넷상 창작물의 배포와 보호를 위한 법률」상의 삼진아웃제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커뮤니케이션수단의 현재 상태와 공중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의 전반적 발전상황 및 이 서비스가 민주적 생활에의 참여와 사상과 견해의 표현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서비스에의 자유로운 접근권을 당연히 내포한다. 따라서 접속차단이라고 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 처분을 비사법적 기구가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점이다.

둘째, IP 주소에만 근거해서 당해 가입자가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이다. 즉 IP 주소에 근거하여, 그 IP 주소에서 행해진 복제행위에 대한 책임을 해당 IP 주소와 연결될 수 있는 '가입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규정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한 삼진아웃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우리나라의 삼진아웃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우리 헌법 제22조 제2항은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적재산권조항의 목적은 지식·과학·예술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이 목적을 위해 헌법은, 지식·과학·예술을 촉진시키는 유용한 정보를 처음으로 생산한 자(창작자)가 그 창작된 정보의 유통을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사적 권리의 창설권한을 입법자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재산권, 즉 창작된 정보의 이용 및 유통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이 그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범위만큼, 그 정보를 자유로이 이용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된다. 이렇게 볼 때, 헌법상의 지적재산권 조항과 표현의 자유 조항은 일정한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의 차원에서는 양자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목적은 창작자의 지적 활동을 경제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지식·과학·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그 지적 창작의 결과를 공중이 널리 이용하고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진리의 발견과 문화의 진보 및 창달을 달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진리발견과 문화진보는 또한 표현의 자유 조항의 핵심적인 목적이자 이념 중의 하나인 것이다. 즉 우리 헌법상의 지적재산권 조항은 표현의 자유 조항의 이념, 즉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며, 그러한 의미에서 양 조항은 이념적으로 충돌관계에 있지 않다. 동시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입법적 형성은 표현의 자유 조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 헌법상의 지적재산권 조항과 표현의 자유 조항 간의 헌법적 관계 내지 의미를 염두에 둘 때,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저작권법 상의 삼진아웃제는 지적재산권 조항과 표현의

자유 조항 간의 관계를 역전 시킬 수 있다. 즉 지적재산권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라는 본질을 왜곡하여, 오히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본말이 전도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해서 내려지는 최대 6개월간의 이용자 계정정지는 이용자가 당해 계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그 수단이 과도하다고 할 것이다. 하물며 게시판 폐쇄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 현재의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3회 받은 게시판에 대해 최대 6개월 간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도 전형적으로 빈대를 잡기 위한 초가삼간 불태우기와 같다. 왜냐하면 게시판에는 불법적인 콘텐츠도 유통될 수 있겠지만, 합법적인 콘텐츠가 더 많이 유통된다. 따라서 게시판을 폐쇄시키는 것은 합법적인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는 공간을 없애는 것이고, 따라서 합법적인 콘텐츠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원이 있고 그 공원을 개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공원 내에서는 간혹 불법적인 행위도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당국이 그 공원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공원 자체를 폐쇄시킨다고 할 때, 그러한 정책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헌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삼진아웃제나 공원을 폐쇄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공원을 유지하면서 공원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단속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우선적으로 취해보지도 않고, 공원 자체를 없애버리게 되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지게 되므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후생은 물론이고 기본적 권리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다. 결국 삼진아웃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아주 손쉽고도 싸게’ 해결하려는 ‘수준이 낮은’ 방법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저작권 침해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계정정지나 게시판 폐쇄와 같은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정보 또는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중구적인 판단권은 법원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이미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적시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법원만이 판결을 통해 개인의 인터넷 접근을 막을 권한이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용자 계정정지명령이나 게시판 폐쇄명령의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불법판단을 전제로 하여 특정 계정 내지 게시판의 이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제재조치 등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적용의 위험성’ 때문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설령 저작권법이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게시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이 요건 자체도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자의적 집행의 위험성은 여전히 매우 높다.

셋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 폐쇄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대해 일반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자기검열은 결국 과도한 사적 검열로 이어질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밖에 없다. 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의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한 모니터링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문제되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과도한 사적 검열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삼진아웃제도 헌법적으로 문제가 많다면, 향후 좀 더 합리적이고도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합리적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법 · 삼진아웃제를 비판한다

- 나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삼진아웃시키지 마라

김지성(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보공유연대IPLet 운영위원)

1. 삼진아웃제가 무엇이기에?

지난 7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법 개정은 2008년 7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입법 예고부터 시작하면 시행 전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정보공유연대 IPLet는 초기부터 이번 개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결국은 문화부 원안에서 일부분이 수정되었으나, 그 핵심 내용은 그대로인 채 시행이 되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소위 삼진아웃제의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저작권법으로의 흡수 통합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삼진아웃제를 다루고자 한다. 삼진아웃제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및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둘째는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의 계정의 6개월 이내의 정지(이용자계정 정지), 셋째는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게시판의 전부 또는 일부의 6개월 이내의 정지이다(게시판 정지). 이와 같은 경고와 처벌은 문화부 장관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털사업자와 같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를 막으면 문화 산업도 발전하고, 따라서 우리 문화도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문화부의 논리는 이제는 하도 들어서 지겹기까지 하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소위 불법복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제약만 가중시켜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번에 도입된 삼진아웃제는 기존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소위 불법복제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단순히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제약의 문제 이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삼진아웃제는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에 전면으로 역행하는 제도로서 우리는 이를 단순히 또 하나의 규제 도입으로만 볼 수 없다.

2.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저작권자의 역습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으로 대표 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의 비용을 낮추었다. 음악 CD에서 MP3와 같은 오디오 압축 파일을 만들고, 이를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복제와 배포를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저작물에 가격을 붙여 파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일부는 1990년대 중반 웹 브라우저와 HTML이 급속도로 확산될 때부터 이에 대한 통제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요구를 법제도에 반영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의 국내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지만, 국제 조약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개정의 배경을 보면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과 미국 등의 지적재산 선진국의 압력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지적재산권자에게 있어서 국제 조약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세계무역기구를 설립하면서 체결된 협정 중의 하나인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이다. TRIPS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권리의 내용이 확대되고, 권리의 침해에 대한 처벌 등을 포함하는 집행 규정도 강화되었고, 또한 회원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 제재 등이 가능해졌다. TRIPS는 이전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과는 달리 이를 개별 국가에 강제할 실질적인 수단(무역 제재)을 지적재산 선진국에게 주었다.

저작권자들이 국제 조약과 국내법을 통해 관철 시키고자 한 핵심적인 요구 사항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왔다. 초기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권리를 추가하는 것과 침해에 대한 민사·형사상의 처분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새로운 권리의 예로는 전송권이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책이나 음반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복제권이 핵심적인 권리였다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디지털화된 음악 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해졌다. 전송권이 생김으로써 저작권자는 이러한 행위를 통제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또 하나 중요한 요구 사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및 권리관리 정보)에 대한 보호였다. 우리가 언론에서 자주 듣는 DRM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 CD의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저작권자는 몇 회 이상은 디지털 파일로 전환(및 복제)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특정한 기기에서만 재생이 가능하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저작물의 이용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DRM을 제거한 음원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증가하는 것처럼,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자 요구 사항도 바뀌었다. 최근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도 불법 복제·전송에 대해 불법 복제자 또는 불법 전송자와 더불어 법적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국가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복제 또는 전송에 대한 단속 등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한다. 가장 최근에는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삼진아웃제나 불법 전송에 대해서 필터링(불법 저작물을 자동으로 판별하여 접근을 막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하면, 필자가 아는 한 삼진아웃제와 필터링 모두가 법으로 의무화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런 사례는 지적재산 선진국이라고 정부가 말하는 미국이나 유럽연합 국가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바뀐 국제 조약과 국내법을 바탕으로 저작권자들이 취한 행동은 민·형사 소송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매년 수만 건의 형사 고발이 일어나고 있다. 몇몇 로펌이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 또는 합의를 전문으로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자살한 비극적인 사건 또한 일어났다. 이 비극은 현재 진행 중이며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 저작권자들은 자신들이 소송을 벌이는 것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부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감시자이자 처벌자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필터링 의무화와 삼진아웃제의 도입이다.

저작물에 대해 접근을 통제하지 않고는 시장을 통해 저작물을 유통시킴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는 현재의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볼 때, 저작권자들이 1990년대 중후반부터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까지 담으면서까지 이런 요구들을 사회에서 수용하는 것이 정당인지 또는 바람직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들의 궁극적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의 통제권을 다시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 측면만 놓고 보아도, 현재까지 저작권법의 개정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성공하고 있다고 보기

도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회적으로 낭비를 늘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DRM을 해제한 음원의 유통이 확대되는 것처럼, 저작권자들의 권리 요구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조치(소송과 같은)가 실패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데에는 저작권자들과 입법권자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잘못된 전제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첫째, 접근에 대한 더 강력한 통제가 가능하다면 불법 복제 및 전송이 합법적인 (값을 치르고 사는) 구매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다. 모든 불법적인 복제·전송을 하는 이들이 불법 복제·전송이 불가능하면 값을 치르고 살 의사가 있지는 않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복제·배포 비용이 급격히 낮아진 것이 불법 복제 및 전송을 더 쉽게, 더 많이 이루어지게는 했지만, 그것이 곧 저작물을 구매할 의사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둘째, 좀 더 많은 자원을 국가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접근 차단에 투자하고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보조할 기술 개발을 끊임없이 하면, 불법 복제와 전송의 차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법 복제 및 전송이 일부의 범법자에 의해 그리고 인터넷의 일부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제한된 행위라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 상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국가나 저작권자가 의도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복제와 전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도 낮지만, 앞으로도 더욱 낮아질 것이며, 불법 복제·전송을 단속하는 기술의 발전 만큼이나 이를 회피하는 기술도 발전할 것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셋째, 저작물의 생산에 있어 기존의 문화산업의 지배적인 생산자 지위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접속의 비용만 낮추는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이전에는 감히 생산자로서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표현을 전달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 했던 사람들이 대자본 문화 산업에 견주어 보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질과 양의 문화와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새로운 기술과 낮은 비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오락 또는 문화 양식이 등장하기도 한다. 블로거들, 아마추어 예술가들,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는 게임들과 같이 새로운 주체 또는 새로운 양식이 사람들의 시간을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

필자가 여기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무한정 새로운 규제와 처벌을 도입한다고 해서 저작권자들이 얻는 이득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단지 과거 문화 산업의 이해라는 관점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새로운 변

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입법권자가 과거 문화 산업의 근시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법을 바꾸고, 시민의 활동을 제약하고, 기술과 문화 발전의 방향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3.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아

우리 저작권법은 입법의 목적을 제1조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다. 권리 보호와 공정 이용을 도모해서 문화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이 바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 통제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저작재산권은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 많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까지는 이러저러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권은 영속적인 권리가 아니라 보호기간이 정해진 한시적인 권리이다. 다른 재산권과 관련하여 이런 경우는 없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저작권법이 존재하는 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권리를 저작권자에게 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다.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렇다면 더 강력하게 접근을 통제할 권리를 부여하고, 삼진아웃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접근을 통제 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목적이 항상 수단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않는다. 어떤 수단들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중요한 목적들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가가 나서서 삼진아웃제를 통해 접근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작자에게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지만 저작물의 이용을 활발하게 해서 문화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용마저 국가가 (그것도 행정부가) 차단하게 되면, 이것은 저작권법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인 공정한 이용을 저해하는 것이다. 최근 손담비의 “미쳤어” 를 따라 부른 아이의 UCC 같은 경우에서처럼 이러한 이용을 저작권의 침해라 보고 이용을 제약하는 것도 이에 해당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권자와 포털 사이트 사이에서 이러한 제한이 가해진 경우지만,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면 국가가 이러한 제한을 직접 가하게 될 지도 모른다.

위에서와 같이 삼진아웃제를 통해 국가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 내에서의 다른 목적과 충돌할 가능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살펴보면, 삼진아웃제는

우리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제17조),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제18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등과 충돌하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은 제37조에서 기본권의 제한은 공익을 위해서 제한적인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제2항). 또한 제12조에서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처벌 등에 있어서 적법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헌법의 전체 구성은 삼권 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제103조).

우선 사생활의 보호와 관련해서 삼진아웃제의 문제를 살펴보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이용자의 계정 정지의 경우에는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을 추적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7월에 제출한 “2009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을 살펴보면 “단속용 SW 및 온라인 처리시스템 개선” 과 “상시 모니터링 인력(청년인턴 등) 운영” 등의 방법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은 이렇듯 소프트웨어와 사람이 동원되는 감시와 추적 시스템에서 사생활을 보호할 어떠한 규정도 갖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축적된 정보를 얼마 동안 보존할 것인지, 이용자 계정과 실제 신원과 연결시키는 것을 허용할지 말지, 한 개인에 대해서 정보의 수집 단위를 사이트 단위로 할 지 아니면 인터넷에 존재하는 모든 게시판을 대상으로 할 지 등에 대해서 언급이 전혀 없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실명제로 대부분의 큰 규모의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개인의 이용자 정보를 통해 개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내가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올리고, 읽고, 다른 이들과 어떤 말들을 주고받는지 감시 받는 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허용하는 다른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통신비밀의 보호를 위해서, 통신 감청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범죄 혐의가 있고 다른 수사의 수단이 없는 경우에,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무리 인터넷이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이중성을 갖는다고 해도 지나치다.

다음으로 표현의 자유 문제를 살펴보자. 우선 앞서 언급한 헌법의 조항들(제21조, 제22조)에서 보장하는 자유권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자. 예를 들어, 결사의 자유가 없이 언론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혼자가 아닌 나와 뜻이 맞는 이들과 단체나 모임을 만들고 이러한 결사체를 매개로 의사를 표현한다. 이렇듯 개별적으로 규정된 자유권들이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 의사소통 또는 표현은 대체로 '저작물'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카페 등의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이 그러하며,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 또한 이런 방식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통·표현 행위는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을 통해 이러한 소통·표현 행위의 불법성을 (법원의 판단 없이) 행정부가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에 근거해서 이용자의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 정지라는 수단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의 계정 정지 또는 게시판의 정지는 과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저작권 침해를 막는다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어떤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서 몇 번의 불법 행위가 있었으니, 앞으로 그 단체는 집회를 아예 개최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시청 앞 서울 광장에서 여러 번의 집회 중에 몇 번의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으니, 앞으로는 서울 광장에서는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처분을 헌법의 틀에서 그리고 인권의 보편적 잣대에서 수용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면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불법성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삼진아웃제는 이러한 우리 헌법의 원리와 보통 사람의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필자도 모든 자유가 아무 조건 없이 항상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종차별주의자가 개인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소수 인종을 말살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더라도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유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법원의 판단이 전제되지 않고 행정부가 임의로 이를 제한하도록 할 수는 없다.

4. 비극의 끝을 위하여

이제까지 삼진아웃제가 저작권법에 도입되기까지의 저작권자의 '투쟁'의 역사와 삼진아웃제가 시민의 자유를 어떻게 침해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우리 저작권법 개정의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서도 저작권자의 일방적 승리의 역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일년이 멀다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저작권자의 요구 사항과 이를 수용한 법 개정의 역사가 진정으로 저작물의 생산자에게 그리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믿음만한 증거는 없는 것 같다.

불법 복제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새로운 규제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일이 이미 관성화 되었다. 저작권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일 년에 수만 건의 소송으로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으며,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무엇이 얼마나 바뀌었는가?

문화부가 주장하듯이 삼진아웃제를 통해서 소수의 '헤비 업로더'를 인터넷에서 몰아내면 불법 복제·전송 문제는 해결될 것인가? 새로운 규제에 대한 상상력이 바닥이 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 정부는 그리고 몇몇 국회의원들은 저작권자에게 권리를 만들어주고 단속 열심히 해주는 것으로 자신들은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지 모른다. 이게 문화 정책이고 문화 산업 정책이라면 이들에게는 너무나 쉽고 편한 방법이겠지만, 저작물의 생산자나 이용자 모두에게는 비극의 연속에 불과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방향이 과거와 같이 음반을 한 장, 한 장 팔아 경제적 보상을 받는 방식과는 맞지 않다면, 인터넷 이용자가 모두 함께 일정한 비용을 감당하고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과 같은 다른 방법들도 생각해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비극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의 상상력과 자원을 새로운 길을 찾는데 써야 한다.

저작권제도 10문 10답

김낙호(미디어연구가)

Q1. 저작권제도가 바뀐다고 할 때마다 뭘 해라 말라 하는데, 저작권이란 도대체 어떤 이치인 겁니까?

저작권의 역사는 다른 기회에 다루어보기로 하고, 현행 제도에서의 저작권이란 한마디로 모든 저작물이 탄생할 때 그 창작자에게 생기는 주인 권한입니다. 크게 저작재산권(“내 마음대로 활용하기”)과 저작인격권(“내가 만들었다고 인정받기”)으로 구성되며, 국내법과 국제조약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보호받습니다. 저작재산 사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인격권을 존중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보는데, 특정 조건 하에서는 ‘공정이용’(fair use)이라고 하여 합법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창작에 대한 이권 보장과, 창작물의 자유로운 활용을 바탕으로 한 축적 진화라는 두 가지 문화 발전 동력을 함께 추구하는 조율이 저작권의 핵심 난제입니다. 대체로 법적으로는 이권 보장 강화의 방향으로 가고, 문화적으로는 더욱 자유로운 활용을 얻어내기 위해 저항하거나 새로운 매체기술을 동원하며 대립하는 패턴이 발생합니다. 한국은 2009년 7월부터 과도한 규제에 대한 논란 속에 가장 최근의 저작권법이 발효 중입니다.

Q2. 그렇다면 저작권을 개정할 때 마다 저작물의 사용이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단적으로, 2009년 7월부로 발효된 개정은 침해로 규정하는 범위 자체는 이전의 법보다 더 넓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해가 적발될 때 받는 불이익이 더욱 강해지고(‘삼진아웃제’의 최장 6개월 게시판 차단) 문화부 등 단속 주체의 일방적 권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필터링[검열] 주체가 여러 겹으로 쌓여있을 수록 실제 법적 한도 이상으로 제한을 가하게 되어 이용문화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들의 활력을 장려하는 공정이용에 관한 진일보한 규정을 고안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것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가 아니라 “권리자의 허락이 없고 법적으로 보장된 공정이용의 범주를 벗어날 때” 이기에 규제가 강해질수록 공정이용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이용 개념에 대해서 꽤 진취적 제안을 여럿 담고 있는 최문순 의원의 2009년 저작권법 개정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물론, 이 개정안 역시 발간 5년 후 도서관 안팎의 복제전송을 무제한 허용하여 창작자의 권한을 역으로 지나치게 박탈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Q3.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요?

사실 공정이용이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저작권법 상의 적용 예외로서 언급될 뿐입니다. 정상적인 저작권 행사의 예외 조건들은 크게 정보원(단순보도, 법정문서 외), 정보사용처(의무교육, 시험문제 외), 정보의 사용방식(비평을 위한 인용, 풍자 외) 등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저작권자에게 가는 손해는 적고 사회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많은 몇 가지 대표적 사용 맥락들을 미리 공식화한 것입니다. 공공업무, 공공교육, 자유롭고 상상력 있는 비판과 토론을 통한 사회 담론 발전 등이 여기에 대입될 수 있겠죠. 이 가운데 특정 업무가 아닌 일상적 차원에서의 정보 사용방식인 인용과 풍자 등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문화적으로는 적절한 인용 관행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며, 산업적으로는 매체별로 인용의 양적/질적 사전 허용범위에 대한 합의가 미진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발전까지도 장려할 수 있도록 공정이용 관련 규정을 더욱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하지만 문화관광부 발표 자료를 보면 댓글과 패러디는 그냥 문제없다고 하던데요?

댓글과 패러디 등을 공정이용 범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합당한 일입니

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 것이, 현행법에서는 활용하는 콘텐츠 자체를 대상으로 할 때만 비평으로 인정하여 법적으로 공정이용을 허용 받습니다. 즉, A를 활용해서 B를 풍자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예: 만화대사 바꾸기 정치풍자). 따라서 그런 경우에 패러디라고 주장하려면 B뿐만 아니라 A자체도 같이 풍자하는 것이라고 애써 논리를 구비해야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황당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은 몇가지 요소가 맞물릴 때입니다. “비평이나 풍자 등을 하는 행위” 인 경우에만 댓글이든 UCC든 패러디든 뭐든 허용한다는 점, 인용에 관한 요건에 대한 합의가 뚜렷하지 않은 점, 단속책임 소재를 겹겹이 늘려 놓은 점 등이 함께 결합하면, 어린이가 음악 틀고 춤추는 장기자랑 동영상에 대해 중개자인 포털이(!) 음원 저작권 침해를 우려한다며 차단해버리는 촌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은 생략하고 뭐든 허용한다는 식으로 쓰여 있는 답변만 믿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Q5. 반면 여러 창작자들은 너무 처벌이 없다고 불만인데 그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실제로 별다른 사회적 순기능 없이, 단순히 저작재산권만 침해하고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뻔히 상업적으로 팔고 있는 영화/음악/만화/소설/프로그램 등을 불법유통해서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입힌다든지 하는 경우 말이죠. 따라서 자유로운 사용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 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런 경우를 분명히 분리해서 인지해야 합니다. 반면 향유와 소비와 섞여 들어가는 2차 창작은 좀 더 경계가 애매한 영역이라서, 새로 추가된 창작의 지분이 어느 정도인가를 케이스별로 판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큰 방향에서는 최대한 사전에 봉쇄하는 것보다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 놓는 방식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 ‘온라인 저작물 거래 시스템’ 등의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 중입니다. 핵심은 사용처에 따른 공정거래 관행의 유연한 조율, 그리고 공탁 체계를 편리하고 세련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Q6. 그런 복잡한 이야기는 모르겠고, 재밌는 만화가 있어서 블로그에 퍼왔는데 합의금 달라며 고소당하면 어찌나요?

문화부의 현재 입장은, 경미한 침해행위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적용한다고 한답니다. 즉 재판으로 가게 생겼더라도,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장사했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 교육을 한 후 기소를 유예하여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식이죠. 그렇기에 만약 자신이 ‘경미한 책

임자’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침해 저작물의 유통을 중단하고, 기왕이면 사과도 하고, 그 대신 법무법인의 합의금 요구는 무시하면 됩니다. 하지만 문화부의 이런 조치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향후에도 지속된다는 보장이 없으니 가급적이면 외부링크와 합법적 임베딩을 생활화하는 것이 좋겠지요? 나아가 원 소스를 명시하여 저작권격권에 해당하는 원저자 정보 표시를 충족하는 쪽이 법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좀 더 큰 차원에서는 ‘영리’와 ‘상습’의 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들을 중재기관이나 기타 합의제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Q7. 저작권 침해를 들어 아무 공간이나 서비스를 통째로 정지시킬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가장 민감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화부의 판단에 따라서 3회 이상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게시판 서비스를 최장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는 삼진아웃제입니다. 문화부의 기본 입장은 이 제도가 정치적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해비 업로더와 불법 복제물 유통에 편의를 제공한 공간만 잡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등은 정지대상이 아니다”라고 친절하게 공식 답변을 올려놓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은 문화부가 현재 내세운 컨셉일 뿐이고, 법적으로는 포털의 카페, 블로그 미니홈피 기타 어떤 것도 기술적으로 볼 때 얼마든지 ‘게시판’이기에 모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정보통신망법 2조1항9호). 만약 해비 업로더가 포털 블로그를 개조해서 거기서 불법자료 교류 커뮤니티를 만들고 거래를 틀면 단속하지 않을 건가요? 이처럼 인터넷 상에서 개별 매체란 칼로 두부 자르듯 나눠지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가 임의로 정지명령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계정 정지하는 건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만 적용하고 정지 시 중립적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실제 법 조항은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133조 2항2호)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다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례처럼 정치적 의도가 약간만 개입되면 얼마든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지당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 계정 역시 실제 불법을 저지른 게시판 말고도 이메일, 다른 게시판들, 개인 블로그 등 여러 서비스와 통합 연동되고 있다면 과잉처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법 자체에는 얼마든지 정권의 의도적 탄압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법적 위협에 대한 안전장치는 세부 시행령들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문화부의 몇 마디 ‘다짐’ 만 있는 것이 현 상태입니다.

Q8. 그렇다면 현 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인터넷판 집시악법인가요?

문화부는 현 저작권법을 공법적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가치중립적인 사법적 영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화부의 의지표명이야 감개무량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법적 영역이라 할지라도 특정 권력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기 더 쉬운 방향으로 바뀐다면 그런 것은 가치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렵겠죠. 처벌이 강해지고 정부가 직접 단속주체로서 개입할 여지를 뚜렷하게 존재하는 한, 포털단속법이나 슷제 인터넷판 집시악법으로 악용될 소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극단적 예로, 정치적 반대 토론이 벌어지는 게시판 사이트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저작권 침해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후 그것을 핑계로 일사천리로 서비스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그 자체로 인터넷판 집시악법은 아니지만, 권력에 의해 그렇게 악용될 경우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법 제도로서 같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직접 개입 권한 자체를 최소화하고, 분쟁은 최대한 비정부 중재기구와 민사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이라든지, 더 진취적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9. 듣고 보니 저작권은 뭐 복잡한 것 같네요.대안저작권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것도 좀 소개해주세요.

죄송하지만, 그쪽이 더 복잡합니다. 저작권 제도 자체를 우선 기본으로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일부 또는 전반적 반작용으로서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크리에이티브커먼스(cc), 정보공유 라이선스, GNU, 오픈소스 운동, 각 개인들이 알아서 고안한 느슨한 방식의 크고 작은 카피레프트 규정들까지, 무척 다양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저작권의 재산화 자체를 부정하여 공공 영역으로 환수하는 극단적 방식부터, 저작권을 바탕으로 사용규정 자체만을 일부 오픈하는 것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 때문에, 대안저작권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최대한 친고죄에 의한 당사자 간 민사 해결로 남고 국가의 융통성 없는 일괄적 단속은 최소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모든 대안저작권은 자신이 자기 창작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가 혹은 세계 단

위에서는 일반적인 저작권이 기본이기에,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강제로 대안저작권 규칙에 의해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비합법적이게 됩니다. 내가 카피레프트를 표방한다는 이유로, 그런 것을 표방하지 않은 남의 저작물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말이죠.

Q10. 그렇다면 이런 저작권법 제도 아래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껏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약간 다시 정리해보죠. 우선 산업차원에서는 첫째, 사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먼저 허가하고 그것으로부터 사후 수익을 올리는 윈-윈 사업모델을 발전시키는 쪽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예: 유튜브의 UCC 연계 광고 수익배분 시스템). 둘째, 원터치로 처리되는 저작권 사용 협의 및 공탁 창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의 비영리 2차 창작에 대한 별도의 규칙 등 사용규정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특히 '비영리'에 대한 더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법적 제도정비의 차원에서는 첫째, 특히 권력에 의한 악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제어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최소한 시행령이나 기타 법적 구속력을 지닌 조항으로). 둘째, 그간 소홀히 다뤄진 공정이용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현 시대에 걸맞게 좀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셋째, 다양한 사용규칙을 보장하기 위해, 일괄적 기준에 의한 정부의 단속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개개인의 사용습관 차원에서는 첫째, 복사보다는 소개를 중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좋은 정보를 널리 알리고 싶다면 펌질 보다는 링크를 통해서 원 출처로 유도해 주세요. 둘째, 출처 명시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저작권적권을 지키게 되며, 무분별한 2차 유포 또한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율정화에 참여해 주세요. 자정작용은 이름과 달리,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성원들이 무척 의식적으로 달려들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애착을 가진 소통공간에서 문제의 여지가 보일 때, 작성자나 관리자에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보와 조언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큰 원칙들로 묶자면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꾸준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불안감에 자멸하지 말고, 지속적 개선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비자로서 시장에 권한을 행사하고, 유권자로서 법적 의제를 압박하고, 향유자로서 모든 종류의 표현과 창작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올바른 저작문화를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더 방문할 곳

-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문화관광부)
<http://www.mcst.go.kr/web/notifyCourt/notice/mctNoticeView.jsp?pCurrentPage=1&pSeq=4732>
- 법제처 (현행 저작권법 전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www.law.go.kr/LSW/Main.html>
- 한국 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 진보넷 정보운동 웹진 액트온 <http://act.jinbo.net>
- 출처표시문화 캠페인 '백투더소스' <http://backtothesource.info>
- 정보공유라이선스 <http://www.freeuse.or.kr>

저작권의 요정



헐. 누가 내 그림을 맘대로 가져갔음.



그건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뭐?

이건 뭐야? 게다가 뭔가 미묘한 일글!

난 저작권의 요정이예요.

뭐?!



아무튼, 저작권이라는 게 뭔가요? 설명 좀...



저작물을 만든,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에요.

그림 그리든 분이 이런 것도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 그나 저나 아까 하신 말씀은 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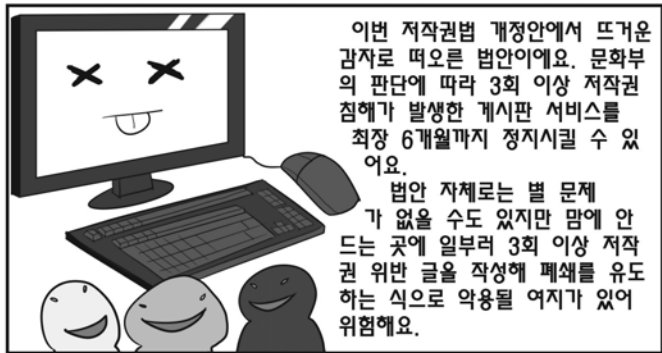
남의 저작물을 함부로 가져가는 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뭐, 상습적으로 사용해 장사하는 게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니 너무 걱정은 말아요.



일단 저작권이라는 걸 침해 당한 건 제 쪽인데... 방금 검색해보니 삼진아웃제라는 게 나오던데, 이걸 뭘가요? 저랑 상관 있는 거임?

아, 그거요.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법안이에요. 문화부의 판단에 따라 3회 이상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게시판 서비스를 최장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어요.

법안 자체로는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맘에 안 드는 곳에 일부러 3회 이상 저작권 위반 글을 작성해 폐쇄를 유도하는 식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어 위험해요.



저작권법에 대해 안중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작권법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저작권법 자체가 너무 나쁜 건 아니예요.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은 너무 과격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니 보완이 필요할거예요.

유권자로서 법적 의제 압박, 소비자로서 시장에 대한 권한 행사, 향유자로서 창작과 표현에 동기부여를 해주면서 올바른 저작 문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해 보아요.

어디가세요?

내 얼굴이 저작권 위반이라 삼진아웃이예요. 그럼 안녕히...

Curtis - <http://curtis187.egloos.com>

Section 10.

전자여권과 권력의 문제

_00101. 전자여권과 권력의 문제 / 김승욱

_00110. 항의서한 :

외국인 거주자 및 여행자에 대한 지문검사 계획에 부쳐 / 김승욱

_00111. [만화] 여권이 필요했던 김 모 씨의 심란한 새해 / 진보네트워크센터, 도단이

전자여권과 권력의 문제

- 전자여권 운동 평가와 전자주민증 운동의 전망

김승욱(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전자여권 운동의 경과

전자여권은 2007년 2월 외교통상부의 공청회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으며, 진보넷은 3월 초에 첫 번째 성명을 발표하면서 신속한 대응활동에 들어갔다.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전자주민증도 곧 이어 도입될 것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곧 이어 인권단체연석회의의 공식적인 대응팀이 결성되었다. 당시 주된 활동단위는 진보넷, 천주교인권위, 그리고 민변이었다. 하지만 이미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공청회를 진행한 외교통상부는 신속히 입법예고를 하였고, 여권법 개정안은 형식적인 절차를 밟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이 후 국회에서 보안, 비용, 절차, 인권 등이 문제시 되었으며 공청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여권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지문수록을 2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개정되어 2008년 2월 국회의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과한다.

외교통상부는 법 개정과 함께 미국과의 비자면제 협상을 꾸준히 추진하였는데,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¹ 한미 양국 간에 비자면제 협정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곧 이어 2008년 10월 양국은 비자면제협정의 핵심사항이었던 범죄정보 교환협정²을 체결한다. 해당 협정의 핵심내용은 미국이 한국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자료

1 2008년 4월, 광우병 소고기 협상이 체결되었던 미국방문(한-미 정상회담)이기도 하다.

2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협력 증진에 관한 협정

표³ 중 특정조건⁴에 해당하는 자료에 미국이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지문을 통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협정문은 외관상 양국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미국은 국민들의 지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한국은 출입국심사에서 지문날인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체결된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⁵ 이 협정으로 미국은 출입국심사대에서 채취하는 한국 여행자들의 지문을 한국 경찰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증해볼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2008년 9월 전자여권이 발급된 지 한 달 만에 국정감사에서 전자여권의 개인정보 유출시연이 있었고, 이를 계기로 전자여권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한다. 사실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읽는 것은 이미 외국에서도 모두 시연된 것이었고, 외교통상부도 알고 있었기에 논란은 금방 사그라들었다. 즉, 외교통상부에서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야"라고 설득할 만한 논리가 있었으며, 실제로 국정감사 시연을 진행했던 송영선 의원은 이 후 국회에서 "보안문제에 대한 설명은 (외교통상부로부터) 잘 들었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송영선 의원과의 공동작업 과정에서 보안문제보다는 지문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 후 송영선 의원이 지문을 삭제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이른다.

국정감사에서 임팩트 있는 시연이 있었기에, 국회에서는 전자여권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공감대—그러나 보안문제라는 한계를 가진—가 있었던 것 같다. 송영선 의원이 인권침해와 형평성 문제로 여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을 때, 여야 구분 없이 모두 인권옹호자들인 양 법안에 동조하였으며, 외교통상부도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후 외교통상부가 여권에서 지문을 삭제하되 여권 발급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인 실시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고, 국회의원들에게는 "전자여권-보안-지문"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었기에 해당 타협안은 만족스럽게 통과되었다. 다만 외통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박선영 의원이 “타협안이 애초 개정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의미 있는 발언을 하였으며, 특히 “국가기관이 신분을 확인하고자 할 때 다른 증빙서류 없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민등록법 25조⁶의 내용을 상기시키기도 하였다.

3 지문을 포함한 개인정보, 범죄기록 등의 정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다.

4 1년 이상 징역 혹은 협정에서 지정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5 사실 이 협정은 미국의 9/11 위원회법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7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증빙서류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2.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3.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주민등록법 25조)

평가: 대응과 그 틈새들

진보넷 명의로 발표된 첫 번째 성명은 전자여권에 반대하는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 모두 개인정보의 유출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첫째, 개인정보보호법이 없는데 생체정보가 유출되면 법의 보호가 불가능하다. 둘째, 개인정보의 중앙 집중은 다량의 정보 집적으로 인해 유출의 위험성을 높인다. 셋째, 지문은 변경이 불가능한 고유한 생체정보로서, 한번이라도 유출되면 당사자에게 평생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RFID는 무선 기술을 사용해서 접촉하지 않고도 근거리에서 정보를 빼낼 수 있다." 두 번째 성명은 인권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발표하였는데, 전자여권을 생체여권⁷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유출의 문제 이외에도, 사진전사식 여권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같은 논리로 전자여권을 추진한 점, 생체정보의 불필요성, 법률상 개인정보 수집의 범위와 한계가 불명확한 점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시에도 전자여권과 미국비자면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전자여권-범죄정보교환(지문)-미국출입국심사"로 이어지는 전자여권의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고,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한계와 언론과 국회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따라 전자여권 문제는 "개인정보 유출-사생활 침해"의 문제에 집중되기 시작됐고, 따라서 인권의 관점보다는 보안의 관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한다. "전자화"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개인정보 유출과 그로 인한 사생활 침해라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프레임이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체가능한지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이 후 미국비자면제와의 관계, 전자여권의 전체 프로세스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에 공개질의를 하였으며, 그 때의 답변들과 해외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체 프로세스의 윤곽을 어느 정도 그리게 된다. 그려진 윤곽을 바탕으로 전자여권이 수단에 불과하지만, 출입국심사가 권력관계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장場이라는 판단⁸을 하게 되었고, 이 후 대응팀

7 이 후 운동과정에서 "생체여권"으로의 명명에 대한 평가도 진행된 바 있다. 외교통상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여권은 "생체정보"의 문제와 "전자화"의 문제를 모두—각각 가지고 있는데, "생체여권"이라는 이름은 "전자화"의 문제를 가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 후 "생체전자여권", "지문정보를 수록한 전자여권" 등이 대안으로 논의되다가, 언론과 검색에서의 노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자여권"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8 권력은 예외상태를 결정하고 배제하는 자이다. 정상과 비정상, 동일자와 타자, 출입국할 자와 출입국을 할 수 없는 자를 가를 때, 권력이 생산된다. 타자에 대한 배제를 바탕으로 권력은 동일자를 통치한다.

은 일본 출입국심사에서의 지문수집 문제, 미국 출입국심사에서의 지문수집 확대 문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서의 과도한 정보수집 문제 등을 함께 제기하기 시작하였다.⁹ 즉, "테러리스트가 있다"라는 언표¹⁰ 속에, 공포—보호의 관계, 권력관계가 생산된다고, 맞서기 시작한 것이다.

여권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 후에는 미국비자면제 문제가 남아있었고, 이 부분이 권력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관점에서는 더욱 중대한 문제인지라, “미국-테러-출입국심사-배제-권력”의 문제를 더 많이 제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인식 속에 2008년 9월 전자여권 개인정보 유출을 시연할 때에도, 시연으로 이목을 끌 뒤, 권력의 문제를 잘 제기해보자 라는 전략이 있었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송영선 의원과 지문의 문제를 공유할 때도, 논의의 초점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형평성의 문제에 있었다.

따라서 송영선 의원안에 대한 외통부의 타협안은 “개인정보(지문)의 유출” 문제는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지만, “지문을 이용한 본인확인과 배제”라는 권력생산의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못한 것이다. 그래도 전자여권에서 지문을 삭제한 것은 이 후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데 큰 걸림돌을 제거한 것임은 분명하다. 지문이 여기저기서 사용되고 있다면, 다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 박선영 의원이 제기했던 주민등록법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새 개정안은 이 후 저항운동의 가능성도 제공하는데, 왜냐하면 여권법 개정안은 “여권 발급시 지문을 이용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이 후 여권 발급시 지문날인을 요구해도 여권법과 주민등록법을 들이대면서 지문은 안 찍고 주민증으로 여권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할만한 근거가 되는 것 같다.

간주곡: 프라이버시와 권력

9 2009년 4월 대한민국 법무부도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의 지문을 검사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진보넷과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한 항의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항의서한은 다음 글(p.38)에서 볼 수 있다.

10 언표는 푸코의 철학적 개념이다. 우리가 언표라고 할 때, “테러리스트가 있다”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능해지는 조건들의 집합에 주목하는 것이다. 조건들의 집합은 제도적 실천, 다른 언표와의 관계, 비담화적 행위, 사회적 맥락 등을 포함하는 가능성의 장場을 의미한다. 또 이 “테러리스트가 있다”가 주체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언표를 통해 주체가 가능해진다. 즉, 이 언표의 발화와 함께 권력의 가능한 위치들이 정해지는 것이다. 언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을 참조하라.

프라이버시의 답론은 두 가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 같다. "개인정보 유출"의 방향으로 얘기될 경우, 프라이버시는 인권보다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답론이 된다.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다른 사람이 도용한다면? 나는 시장에서 또는 법망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가능하다면 개인정보를 덜 수집하고, 잘 보호해야한다. 권력의 생산과는 별 관계가 없다.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보다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경 써야 될 활동으로 보인다. 전자여권 운동에서도 이 문제가 전면에 부각되었는데, 이러한 논의는 오히려 국가와의 관계—권력의 문제를 은폐하는 효과를 야기한 것 같다.

국가와의 관계에서 얘기될 경우 프라이버시는 여전히 유효한 답론이 된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이슈¹¹가 있다. 우리는 "국가가 마음대로 나의 기록, 나의 정보를 들여다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은 효과적이다. 프라이버시 답론을 무기로 국가의 이러한 노력을 저지시킬 수 있다면, 이 답론은 권력에 저항하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권력의 문제가 국가—개인의 관계설정에서 이미 내재되는 것이라면, 프라이버시 답론의 한계와 가능한 다른 방향들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 방한했던 라이언 교수는 "프라이버시"보다는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라는 말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고민의 지점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오히려 이 질서, 권력관계를 혼란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 예컨대, 자주 유출되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국가는 이 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클린캠페인¹² 따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정보가 정확할수록 통제가 용이하니까, 유출되면 될수록 통제에 구멍이 생기니까, 정부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욕망하고 명령한다. 따라서 우리의 운동이 권력에의 저항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유출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할 문제일지도 모른다. 오히려 개인정보가 유출될 때마다 냉소적으로 축복하거나 개인정보를 교환—공유함으로써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더 웃기고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다. 프라이버시를 가장 욕망하는 자는 오히려 권력인 것이다.

11 인터넷 사업자(포털 등)에게는 IP주소와 로그기록 보관을, 통신사업자(핸드폰 등)에게는 감청설비의 설치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12 정부에서 국민(네티즌)들이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해주는 캠페인. 국민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목록을 보고 자기가 가입하지 않은 사이트에 탈퇴요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유일하게 "주민등록제—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이 잘 진행될 수록 정부는 국민들이 어느 사이트에 가입해서 활동하는지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즉, 정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너의 인터넷 사용 내용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유지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셈이다.

전자주민증 반대? 주민등록제 폐지!

올해나 내년쯤에 행안부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¹³한다고 발표하면 어떻게 될까? 진보넷과 인권단체들 그리고 더 많은 단위들이 함께 대응할 것이다. 그런데 전자여권과 비슷한 방향으로 운동이 진행되는 않을까? 요컨대, 우리는 전자주민증을 반대하고, 언론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떠들어대고, 정부에서는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국회에서는 행정과 국민의 편리와 기본권의 교환가치를 비교하다가 법을 통과시키고. 이 과정에서 권력의 문제는 다시 한 번 은폐된다. 권력은 전자주민증이 아니라 이미 주민등록제도와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은 태어난 아이에게 번호가 부여되는 순간에, 지문을 찍으라고 17세의 손들을 인주로 끌고 가는 공무원의 손끝에, 사람 대신 번호가 오가는 컴퓨터의 기계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잠시 뒤돌아보면, 전자주민증은 이미 2007년에 그 샘플까지 공개되면서 곧 도입된다고 발표된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새 전자주민증은 신분증 표면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거하면서 주민등록번호나 지문과 같은 민감한 정보는 IC chip 내부에 저장하여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고 한다. 또 인증서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서 본인확인을 할 때, 전자주민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 하였다. 이 전자주민증은 시범운행을 걸쳐 2009년부터는 강제발급될 예정이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후 전자주민증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자여권이 추진 중이어서 논란부담을 피하고자 했을 수도 있고, 전자여권과 다르게 전자주민증은 교체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에 예산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일부러 뒤로 미루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혹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옥션사태¹⁴가 아닐까? 무엇보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천만 명의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을 이용하여 온라인 본인확인을 진행한다는 행안부의 계획은 더 이상 말해질 수 없는 말인 것이다. 또 옥션사태에 대한 진보넷 등

13 전자주민증은 곧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옥션사태 이 후 주민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전자주민증 도입을 얘기한 바 있다. 최근에도 인감제도 폐지를 발표하면서 전자주민증이 언급되었다.

14 2008년 4월 인터넷 쇼핑물 옥션에서 1081만명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일부 계좌정보 등 포함)가 유출되었다.

단체들의 대응도 한 몫 했을 것 같다. 당시 옥션사태에 대한 네티즌들의 왈가왈부는 보안문제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제도의 문제로까지 옮겨갔다. 진보넷과 같은 정보인권단체들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의 문송천 교수까지 나서서 "주민번호는 군번"이라며 무조건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해 힘을 보탰다.

즉, 행안부가 전자주민증을 밀고나갈 수 없었던 것은, 주민등록제도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전자주민증 운동을 해야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전자주민증이 추진되고, 그것에 반대해 기껏해야 다시 원래의 주민등록제도로 돌아가는 제자리 운동이 아니라, 전자주민증은 출발조차 할 수 없도록 그 디딤돌인 주민등록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운동은 행안부의 발표를 기다려서는 안 되고, 지금 이미 시작되고 있어야 하는 운동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야 "개인정보—사생활침해"라는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고, 진짜 권력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침해",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주민번호는 군번이다"라는 언표가 필요한 것이다.

디저트: 상상력과 대안

이 운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제도가 없어도 된다는 상상력과 그에 대한 현실적 대안인 것 같다. 주민등록제도가 없다면 행정이나 복지는 어떻게 수행되고 보장되는가? 해외에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가? 옥션사태 때는 "목적별 번호"를 언급한 적이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주민번호를 사회보장번호로 전환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어떨까? "통제가 아니라 사회보장을"이라는 담론과 연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사회보장번호는 매우 제한된 행정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번호는 외출 수 없는 20~30 자리의 랜덤한 숫자로 만들고, 국민이 신청할 시 지자체에서 재/발급하도록 하자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들은 불가능하지 않다. 행안부도 이미 주민등록번호를 새롭게 바꾸는 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지난 전자주민증에서 이미 표면의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바 있다. 즉, 이미 없으면 좋은 번호, 최소한 민간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번호라는 공감대가 있는 것이 아닐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주민번호가 정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의서한 : 외국인 거주자 및 여행자에 대한 지문검사 계획에 부처¹²

김승욱(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김경한 법무부 장관님께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가 새롭게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씁니다. 개정안은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여행자들과 거주자들의 얼굴사진과 지문을 채취하고, 검사하며, 범죄수사에 이용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제도가 외국인에 대한 적대를 불러일으킬 뿐인 매우 위험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
- 1 본 항의서한은 2009년 4월 20일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으로 전달되었다. 개정안은 지문을 이용한 검사 이외에도, 이주민에 대한 단속과 구금의 강화, 난민신청자의 권리 불인정, 행정편의를 위한 승객예약정보의 무차별적 열람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인권단체, 이주민단체, 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대응 중이다.
 - 2 이 항의서한은 전국 17개 인권단체의 명의로 발표되었으며, 참여단체는 다음과 같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전북인권교육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광주인권운동센터, 새사회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적대의 효과

법무부의 보고서대로, 미국과 일본이 이미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중에 있으며, 유럽연합도 동일한 제도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시작한 새로운 제도는, 테러와의 전쟁을 홍보하고 국경을 넘어 이주하면 안 된다고 국가가 판단한 사람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동일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어쩌면 얼굴사진과 지문을 이용해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보이지 않는 장막 속에서 — 내국인들이 당당하게 통과하는 동안에 외국인들은 굴욕적인 신체검사를 받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내국인들은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실 우리 모두는, 외국인들을 불신하고, 검사하고, 적대시하는 방법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입니다. 우리는 이미 외국인들을, 나와 국적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며 바라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출입국심사는 그러한 경향을 더욱 더 심화시킬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당신의 2세대들이 혹은 그 2세대들이 세계를 여행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세상의 모든 국경에서 지문을 찍는 신체검사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환대가 아니라 불신으로 손님을 대하고, 친구가 아니라 적을 만드는 제도 속에서 안전보다는 전쟁이 일상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가 새로운 출입국관리법을 입법예고하고 며칠 뒤, 미국에서는 모든 여행자들에 대해서 알몸스캐너를 이용한 출입국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 지문채취를 시작한 미국은 2007년부터 그 범위를 열 손가락 지문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제는 알몸스캔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하려 할까요? DNA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과연 점점 안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오히려 미국 의회는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매년 보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검토보고서와 다르게 미국 의회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4년 동안 13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효과는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은 3~4%의 지속적인 판단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시스템이 다운되어서 수천 명의 여행자들이 밤새 공항바닥에 억류되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차마 실패를, 새로운 프로젝트가 효과 없이 예산만 축내고 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점점 더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실패 선언을 지연 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이미 여행자들이 가장 방문하기 싫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미국을 싫어하는 만큼, 미국인들도 외부에서 온 손님들을 불신과 적대 속에서 바라봅니다. 어쩌면 이러한 적대가 미국과 테러집단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과 테러집단 모두가 억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류시민과 배제된 자들

다음으로, 지문찍기와 신체검사가 수행할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문찍기를 이용한 검사의 맞은편에는 입국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테러리스트 혹은 과거의 범죄자들—의 리스트, 즉 블랙리스트가 존재합니다. 이 편지가 쓰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미국은 1,181,565명이 등록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같은 목적의 블랙리스트를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도 새로운 출입국심사 제도가 시작되면 위와 같은 블랙리스트의 관리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쩌면 벌써부터 관리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리스트에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미국과 그의 동료 국가들이 적 혹은 문제인간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보다는 무슬림이, 자본가보다는 노동자가, 백인보다는 유색인이, 비감염인보다는 감염인들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관리할 블랙리스트에는 아마도 동남아나 중국의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리스트는 당연하게도 차별로 이어집니다. 국가는 스스로가 세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리스트를 관리·운영하고 출입국심사에 적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차별과 차별의 끊임없는 재생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의 몇몇 활동가들이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담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일본에서의 출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왕성한 정치활동[노동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이고, 일본에서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추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일본의 출입국심사대 공무원이 어떻게 한국에서의 활동경력에 대해 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아마도 양국 간에는 그러한 내용의 정보를 교환한다는 약속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는 그와 같은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자면제의 대가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범죄경력자들의 지문정보를 요구했고, 그렇게 넘어간 지문정보들은 지금 이 순간 미국의 출입국심사대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국민의 지문정보를 그렇게 넘기는 정부가, 당연히 새롭게 보유하게 될 외국인들의 지문정보도 다른 국가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결국에는 각 국이 보유하고 있는 블랙리스트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세계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류시민과 배제된 자들. 누군가는 공항의 VIP라운지를 이용해 국경을 넘는 동안에, 누군가는 출입국공무원들에게 잡혀서 폭력과 폭언을 당하다 강제추방을 당해 국경을 넘게 될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폭력이자 권력이고 차별입니다. 우리 모두 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기 위해서 숨 막히는 복종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문찍기와 범죄수사

마지막으로, 당신과 법무부가 채취하는 지문들을 범죄수사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에 지문을 삽입하기 위하여, 지문찍기가 인권침해라고 인식되어 있는 것은 "지문과 범죄를 연관 짓는 막연한 관념에 근거한 것"이고 "지문은 본인확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짓말로 국회와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동안에, 법무부는 지문을 범죄수사에 이용할 것임을 솔직하게 드러내어 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곳곳에서 지문채취가 시행되고 논의되고 있지만, 범죄수사에 이용한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국가에서는 본인확인의 용도 이외에 범죄수사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의 지문을 채취하여 매우 손쉽게 범죄수사에 이용해오던 관행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OECD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보관기관과 폐기시점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열람·정정·삭제 등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집한 지문이 언제 폐기되고, 누가 관리·감독하는지는 알 수 없으며, 정보주체의 권한 등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수사를 위해서 사용할 계획임은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수집하고 있는 이 국가의 폭력성과 그것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죄수사에 사용하는 이 국가의 관행을 전 세계에 고발할 것입니다. 새로운 개정안이 이러한 제도를 외국인들에게 확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상, 다른 나라의 정부들과, 세계의 인권기구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법무부의 새로운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한국이 시작하고 나면, 중국, 인도, 동남아의 국가들, 중동의 국가들도 동일한 제도를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지문을 찍어야 되는 세계가 살만한 세계는 아닐 것입니다. 지구별의 어떤 여행자도 그렇게 굴욕적인 방법으로 지구를 여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행자들을 정중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 필요했던 김 모 씨의 심란한 새해

2010년 1월 1일 김모씨는 새해 첫계획으로 해외여행을 결심했다.







김모씨의 새해 계획은 “지문날인 전자여권 반대하기” 로 급수정되었다.
 내용 : 진보네트워크센터, 도단이 / 그림 : 도단이

Section 11.

이슈

- _01000.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
- _01001. '사무라이 조'와 임시조치 / 라론
- _01010. 퍼블릭 도메인과 2차 창작 / 명야핑
- _01011. 大監聽時代대감청시대, 넷트향예술! / 김승욱
- _01100. 약착같아라, 정부의 정보 폭식 / 오병일
- _01101. 한없이 불투명에 가까운 '감청의 투명화' / 장여경
- _01110.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 홍지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¹

이 선언문은 Association of Independent Video and Filmmakers, Independent Feature Project, International Documentary Association, National Alliance for Media Arts and Culture, and Women in Film and Video (Washington, D.C., chapter)에 의해 작성되었고,

Center for Social Media in the School of Communication at American University and the Program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Washington College of Law at American University의 자문을 받았으며,

Arts Engine, Bay Area Video Coalition, CINE, Doculink, Electronic Arts Intermix, Grantmakers in Film and Electronic Media, Full Frame Documentary Festival, Independent Television Service, National Video Resources, P.O.V./American Documentary, University Film and Video Association, Video Association of Dallas, and Women Make Movies의 서명을 받았다.

이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저작권법 상의 공정이용을 활용할 때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적용 방식이 일반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공정이용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적 가치가 저작권법 내에서 드러나는 방식이다. 이 선언문은 공정이용이라는 중요한 법적 정책에 대해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공정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 공정이용이 어떤 방식으로 실천되어 왔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지침은 경험적 원칙과 윤리적 원칙 모두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이 선언문은 다른 분야와의 비교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저작물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인쇄 매체를 통해 활동하는 문화 및 역사 비평가들이나 뉴스 진행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를 누려야 한다.

1 이 글의 원문은 Documentary Filmmakers' Statement of Best Practices in Fair Use 입니다.
http://www.centerforsocialmedia.org/resources/publications/statement_of_best_practices_in_fair_use/
번역 : 미디어액트 오재환

서론

이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이 필요해진 이유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지난 몇 십 년간 저작권 해결에 대한 요구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분야의 창작자들은 저작권에 대해 이 정도로 심한 요구를 받지 않으며, 이전 시대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 또한 이 정도로 심한 압박을 이렇게 자주 겪지는 않았다. 하지만 저작권법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가면서, 오늘날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자신들이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제약을 받고, 결과적으로 대중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믿고 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적절한 저작권료를 지불한 자료만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그들의 지식이나 관점을 대중에게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스스로가 저작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저작권자로서 주장하는 권리를 다른 이들이 얼마나 인정해주려고 하느냐에 그들의 수입이 달려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공정이용의 남용이나 이를 악용한 착취를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 자신의 수입이 줄거나 그들의 작품이 부당하게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통해, 저작권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려고 한다.

배경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의 중심이 되는 사회적 합의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저작권법을 통해 우리 사회는 개인이 어느 정도의 제한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인정해줌으로써, 창작 활동이 현존하는 문화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우리 사회는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통해 창작자들의 노력을 보상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 창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창작자들이 어떤 저작물을 포함하거나 여기에 의존하는 새로운 뭔가를 만들 때 그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저작물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느 한 사람이 자기 밖에 모르거나 욕심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회 전체에 중요한 문화적 결과물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작권법은, 특정 조건 하에서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이용이다. 공정이용은 150년이 넘게 저작권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공정이용은,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면, 단순히 어떤 특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다. 사실 대법원에서 지적한 것처럼, 공정이용은 저작권이 헌법 수정 제 1항(표현, 종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 - 옹건이)에 부합하도록 돕는다. 저작권이 예전보다 더 많은 창작물을 더 오랜 기간 동안 보호할수록, 새로운 창작 과정은 점점 더 직접적인 제약을 받는다. 그 결과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이용이 중요해졌다.

저작권법에서 공정이용의 적용 방법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창작자들에게 이득이 된다. 창작에 필요한 것들과 창작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분야, 기술의 발전,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변호사와 판사들은,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합리적 판단 규칙"을 따른다. 다시 말해서, 저작물의 허가받지 않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이득이 저작권자가 입는 손해에 비해 클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게 된다. 공정이용은 유연한 것이지, 불확실하거나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사실, 다큐멘터리 제작을 비롯하여 비평이나 창작 활동에 관련된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와 판사들은 그 분야 전문가들의 통념과 관습을 고려하여 무엇이 그 분야에서 "공정"한 것인지를 판단한다. 저작권자의 손해와 사회적 이득의 크기를 저울질하는 것은 공정이용 여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과정이고, 이를 위해 법정에서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테스트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이 계속해서 되풀이된다.

- 저작물을 허가받지 않고 사용하면서, 그 저작물에서 가져온 자료를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는가, 아니면 그저 원래와 똑같은 의도와 가치를 가지고 되풀이하여 사용했는가?
- 원 저작물의 성질과 그 사용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사용된 자료의 성질과 양이 적절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모두는, 다른 무엇보다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손해를 입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법정에서는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하

다고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는 애초에 저작권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낮다. 보통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저작물을 원래와는 다른 맥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목적의 변경"에 대한 기준을 쉽게 만족시킬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보통 저작물을 인용할 때 제한된 부분만을 짧게 사용한다. 그러므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저작물 사용 때문에 법정에서 서게 되는 흔치 않은 경우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공정 이용 주장을 인정해주었다.

위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고려 사항이 있다. 그것은 그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관습에 비추어서 사용자가 몇몇함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했는지 여부이다. 앞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이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을 통해서 공정이용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선언문은 다큐멘터리 분야의 사람들이 공정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증거의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떤 저작물을 사용한 방식이 이 선언문에서 소개할 원칙들에 해당될 경우에 저작물 사용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을 돕게 될 것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다른 창작자 집단에서 공정이용이 활용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는다. 예를 들면, 역사가들은 흔히 다른 역사가들의 저작이나 문서 자료를 인용하고, 예술가들은 기존의 이미지를 (단순히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해석하고 비평한다. 또한 학자들은 문화에 대한 평을 하기 위해 여러 문서 자료, 시각 자료, 음악 자료를 예로 들게 된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또 다른 예는, 뉴스 미디어에서의 저작물 사용이다. 공정이용은 매일 방송되는 TV 뉴스에서 건전하고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대중 영화, 옛날 TV 프로그램, 기록 사진, 대중 가요들은 TV 프로그램에서 끊임없이 일상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사용된다.

이 선언문에서는 많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 의해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더불어서 올바른 공정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이해하는 바를 바탕으로 한 다른 사람들의 관점도 덧붙여져 있다. TV, 케이블 방송, 영화관에서 상영할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종종 저항에 부딪힌다. 그들은 (종종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에게서) 만약 영화를 대중에게 배포하고 싶다면 사용된 "모든" 저작물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자주 듣는다. 이런 상황에서도, 몇몇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겁을 먹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공정이용을 활용해 온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쓸 데 없는 관심을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크게 알

리지 않았다. 이 선언문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유발언의 권리 - 그리고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권리 - 를 공개적으로 행사한다.

이 선언문은 가장 상태가 좋거나 하나 밖에 없는 기록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부족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 선언문은 제작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놓은 상황에 적용된다.

또한 이 선언문은 "고아 저작물" - 저작권이 걸려있는 것으로 추측되지만, 웬만큼 노력해도 저작권자를 찾아낼 수가 없는 저작물 - 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출처가 명확한 자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아 저작물 역시 공정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가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공정이용의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어떤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 현재 U.S. Copyright Office의 주도 하에 고아 저작물 문제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보다 자세한 정보는 www.copyright.gov/orphan 참조).

마지막으로 이 선언문은 "자유이용" -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저작권을 해결할 필요가 전혀 없는 자료 - 에 대한 것이 아니다. 자유 이용의 여러 형태에 대한 예시는 www.centerforsocialmedia.org/fairuse.htm에 있는 문서들에 나와 있다.

선언문

이 선언문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자신의 작품에 저작물을 사용해야 할 때 공정이용에 의존할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선언문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평상시에 실질적으로 겪게 되는 네 가지 종류의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공정이용의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 이 네 가지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네 가지 상황은 현재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가장 자주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다.) 이 선언문에서는 각각의 경우마다 공정이용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뒤이어 각각의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한 사항을 이야기한다.

네 가지 종류의 상황 및 각각에 대한 원칙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하나 : 사회, 정치, 문화적 비평의 대상으로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설명 :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문서, 이미지, 사운드의 형태로 된 미디어 작품에 대한 비평에 관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비평적 분석을 위해 특정 저작물을 예로 들어 설명하게 된다.

원칙 : 저작물의 이러한 사용은 일반적으로 다큐멘터리 제작자의 공정이용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것은 (예를 들면) 신문에서 신간 서적에 대한 리뷰를 하면서 설명을 위해 책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과 동일한 경우이다. 사실 이러한 활동은 공정이용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제작자가 그 작품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를 하기만 한다면, 저작물의 사용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 직접적인 평가의 형태가 되었든, 예를 들어 패러디 같은 것이 되었든, 모두 비평의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저작물이 비평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어떤 책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 등의) 비평 자체가 그 작품의 시장에 경제적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는 공정이용과 상관이 없다.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는 이가 비평이나 분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를 전달하는 데 충분한 만큼의 저작물을 사용해야 한다.

한계 : 위에서 말한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사항이 한 가지 있다. 어떤 저작물을 너무 많이 혹은 광범위하게 사용한 나머지, 이것이 비평의 기능을 하는 것을 넘어서, 비평의 대상이 되는 것(혹은 그와 같은 종류의 것들)에 대한 관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이 되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비평 목적의 저작물 사용은 그 작품(혹은 그와 유사한 작품)이 가지는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둘: 어떤 주장이나 논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대중문화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설명 :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저작물이 그 자체가 비평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다큐멘터리에서 펼쳐지는 어떤 주장이나 논점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다른 극영화의 장면 일부를 이용하여 인종 문제에 대한 미국인들의 태도 변화를 보여줄 수도 있다.

원칙 :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종류의 이용은 일반적으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된다. 다큐멘터리에서 주장하는 바를 설명하기 위해 인용된 영상이 관객에게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관객 수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공정이용 선언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대중문화 작품들은 전형적으로 설명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상황에서 인쇄 매체의 작가들은 (어떤 말이나 이미지의) 인용을 통해 설명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저작물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은 그 다큐멘터리가 가지는 지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에 비해서는 부차적이면서도, 다큐멘터리의 완성도를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래와 같은 의도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도를 덧씌우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대중문화 저작물이 가지는 원래의 가치를 부당하게 이용하면서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가치를 덧붙이려는 시도이다.

한계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확실히 지킨다면,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 자막이나 엔딩 크레딧을 통해서 자료의 저작자를 적절히 밝힌다.
- 가능한 한 적절한 정도까지는, 여러 가지 다른 출처에서 인용을 한다.
- 각각의 인용은(설명을 위해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용을 했는지는 상관없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한다.
- 단순히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동일한 장면을 찍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용을 하지 않는다.

셋: 다른 것을 찍는 과정에서 저작권이 걸린 미디어 저작물이 포함될 경우

설명 :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종종 실생활 장면을 찍다가 저작권이 걸린 사운드나 이미지를 같이 찍게 된다. 흔한 예로는 벽에 포스터가 붙어 있거나, 라디오에서 노래가 나오거나, TV 프로그램의 소리가 배경에서 들리거나(혹은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다큐멘터리의 맥락에서 보면, 우연히 담긴 저작물들 역시 다큐멘터리에서 기록하고 있는 일상의 현실의 한 부분이다.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 촬영 대상에게 라디오를 끄라거나, 포스터를 떼라거나, TV를 끄라고 말함으로써 - 찍고 있는 현실에 손을 대어 왜곡할 수밖에 없다.

원칙 : 공정이용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현실을 왜곡하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한다. 의도적으로 연출된 장면을 촬영하는 것이 아닌 경우, 어떤 사운드나 이미지가 예측 못한 상황에서 우연히 찍혔다면, 적당한 정도까지는 다큐멘터리의 완성본에 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여기에 어떤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다큐멘터리의 목적 자체에, 그리고 현실에 기반한 영화 제작의 원칙들(비평, 역사적 분석, 저널리즘 등)이 가지는 가치에 위배되는 일이다.

한계 : 우연히 찍힌 저작물의 사용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해주는 논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신경을 써야 한다.

- 어떤 장면에서 특정 미디어 저작물이 재생되거나 보여지는 것이 요청이나 연출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 영화의 완성본에 포함되어 있는 우연히 촬영된 저작물이 그 장면이나 인물의 행동에 중요한 구성요소여서는 안된다.
- 저작자를 적절히 밝혀야 한다.
- 우연히 촬영된 저작물 자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그 장면을 다큐멘터리에 포함시키는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우연히 촬영된 저작물이 그 장면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 음악의 경우, 우연히 촬영된 저작물이 배경음악 대신 이용되어서는 안된다(예를 들면, 우연히 촬영된 음악의 박자에 맞추어 컷이 분할된다든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그 음악이 연결되어 사용된다든지 해서는 안된다).

넷: 역사를 설명하는 장면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설명 : 많은 경우 특정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나 주장을 전달하는 가장 효율적인(심지어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왔던 발언들, 그 사건과 관련된 음악, 그 당시 촬영되었던 사진이나 영상을 선별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이런 자료들은 합리적 조건 하에 허가를 받고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때때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원칙 : 다큐멘터리라는 매체의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때때로 이런 상황에서 공정이용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화 제작을 통해 새로운 세대의 시민들에게 지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적절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종류의 공정이용은 저작권 본연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데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적절한 제한이 없다면, 이 원칙에 따른 공정이용은 -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을 포함하여 - 저작권자들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이익을 저해할 수도 있다.

한계 : 이러한 종류의 공정이용의 정당성이 지지를 받을 수 있으려면,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다큐멘터리가 문제의 자료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계획되지 않았다.
- 역사에 대한 설명에 해당 자료가 필수적인 기능을 하고, 다른 적절한 대안(즉, 동일한 일반적 특성을 지니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 그 자료의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문제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한 적당한 예산을 넘어서는 돈을 지불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역사에 대한 설명을 위해 선택된 자료가 그 설명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되었다.
- 영화에서 쓰일 설명 자료를 선택할 때 한 가지 출처에 거의 혹은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았다.
- 사용된 자료의 저작권자를 적절히 밝혔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겪는 다른 상황에서의 공정이용

다큐멘터리 제작자에게 해당되는 공정이용의 범위는 방금 말한 네 가지 원칙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영화를 만들다 보면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섞여있거나, 혹은 단순히 이 선언문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려할 때,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은 이 선언문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공정성, 분량의 적절성, 합리성과 같은 기본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 어떤 저작물을 인용한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한 끝에 이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면, 공정이용을 주장해야 한다.

공정이용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 선언문의 두 가지 목적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공정이용을 활용하도록 장려하고, 다큐멘터리 작품을 보증하고, 배급하고, 상영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사람들이 공정이용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공정이용과 그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몇 가지 흔한 오해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러한 오해 중 몇 가지를 간단히 해명하기로 한다.

- *공정이용은 본질적으로 고상하고 "교육적인" 목적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 비영리적이고 학술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종종 공정이용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목적의 저작물 사용만이 공정이용인 것은 아니다. 기존 저작물을 이용해 만든 새로운 작품이 그 의도와 결과가 "상업적"이더라도 – 심지어 굉장히 상업적이더라도 – 공정이용을 주장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저작물 사용을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법원 판례의 대부분은 돈을 벌기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와 관련이 되어 있으며, 그 프로젝트들 중 일부는 실제로 돈을 벌었다.
- *공정이용이 꼭 지루해야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저작물을 사용한 영화가 효과적으로 관객을 끌어들이고 붙잡아 놓는다고 해서, 이것이 공정이용을 주장하는 데에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다. 어떤 저작물의 사용이 다른 모든 면에서 공정이용 실천 선언문에 나온 원칙과 한계를 만족시킨다면, 그것이 재미있거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은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과 무관하다.
-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어떤 저작물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다 실패했다고 해서, 문제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공정이용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은 분쟁을 피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고 싶어 한다.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일지라도, 저작물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허가를 얻으려고 시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빠지지는 않으며, 실제로 이를 통해 제작자의 선한 의도를 보여줄 수도 있다. 그리고 가끔은(네번째 원칙과 관련된 경우) 이러한 노력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사무라이 조’와 임시조치

라론(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출생에 관련한 주류 해석

사무라이 조. 그님의 역사가 어디서 부터 시작되었던 것인가?! 에도시대 초기의 간류도(巖流島). 나룻배에 몸을 실은 미야모토 무사시[宮本武藏]가 태양을 등에지고 노(櫓)로 만든 목검으로 사사키 코지로[佐々木小次郎]를 단타에 시켰던 때가 바로 그 기원이라는 것이 주류 해석이다. 이에 따르자면 일본 열도에서 무사시의 기마에[好期]와 코지로의 곤조[根性]는 세월에 바래지 않고 더욱 칭송되어, 300년 후 현해탄 너머 남한반도에 제국주의란 장검을 휘두르는 일본 순사를 탄생시켰다 하는데.

일제강점 당시 순사라는 말만 들어도 우는 아이가 눈물을 그쳤다고 하니, 순사야말로 곳감과 호랑이를 대체하는 폭력 세계화의 침병이었던 셈. 순사들 폭력 앞에 우리네 사람들은 지혜와 슬기와 무력으로 저항했지만, 굴종으로 안전의 길을 택한 사람들 또한 있었다. 동족 중에 변절자는 더욱 냉혹하고 잔인한 것이 세상 이치던가. 어떻게든 웃놈들에게 더욱 독종으로 보여야 살 수 있다는 그네들의 비굴한 사정을 무어라 욕해야 하는가. 일제의 압박과 내부 변절자들에 신음하던 우리네는 드디어 광복을 하게 되나 기쁨의 순간은 짧았다. 순사는 경례의 방향을 승만 리에게 돌린 후 명찰을 경찰(이라 쓰고 째새라 읽는다)로 갈아타고 고문, 추적, 폭행의 비기를 안보, 질서, 불범엄단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 후 백주 대로에서 야밤의 지하철 역까지 폭력경찰의 역사적 비극은 6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작렬! 사무라이 조. <참세상 사진>

어떠한가? 서터스피드를 짐작케 하는 봉 끝의 힙합 무브먼트, 강렬한 다크포스를 풍기는 전경 (이라 쓰고 바퀴벌레라고 읽는다), 폭력 앞에 그대로 노출된 하얀 맨살의 사람들. 이런 살벌한 풍경이 이천만 수도권 시민의 영원한 친구, 지하철 역사 내에서 일어난 것이다. 2009년 5월 1일 119주년 세계 노동절, 이 장봉을 휘두르는 자, 바로 사무라이 조의 탄생 순간. (여기서 사무라이 조의 봉이 1.5m이니 무사시의 이천일류(二天一流, 와키자시+카타나)라고 하기 보다는 사사키의 간류(岩流, 장검)라고 보는 것이 옳다느니 하는 등의 논의는 제외하도록 한다.)

'나는 억울한 한 명의 시민이고, 장봉은 그저 취미였을 뿐이고.'

사무라이 조의 탄생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거리의 평화가 때려 맞는 광경이라 만천하의 인민은 놀라고야 말았다.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사건을 눈앞에 두고 남한의 인민은 재빨리 서로에게 알려 나가기 시작했다. '사무라이 조를 엄벌하자', '등에 비껴 맨 후라스틱 장봉을 건들면 안된다', '사무라이 조의 배후에는 경찰청이 있다' 등 사실과 의견이 혼합되어 사무라이 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터넷 공간을 가로질렀다. 그러다 갑자기 인터넷에서 사무라이 조는 사라졌다. 백주대로에서 장봉을 휘두르던 그 기백이 어디로?! 사무라이 조가 자신이 사라진 연유에 대한 읍소를 했는데 궁홀히 여기어 들어보도록 하자.

"나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사진 하나만 보고 경찰이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른 양 글이 떠돌아 다녔다"

"우리 부대 홈페이지에 터무니없는 비난 글이 많았다"

"이런 글이나 사진 등은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해 권리 침해 신고를 했다"

"당시 우리 대원들 가운데는 시위대에게 끌려가 코뼈가 부러진 경우도 있었다"

"나는 시위대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 시위대한테 대원들이 맞으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를 떼어놓기 위해 장봉을 휘두른 것"

"당시 현장에 취재 카메라만 30대가 넘었다, 만약 내가 때렸다면 그 모습이 찍혔을 텐데 그런 장면은 없다"

▲ '장봉 휘두른 경찰간부 사진' 왜 사라졌지? 2008. 05. 08 오마이뉴스, 2009년 05월 18일 15:42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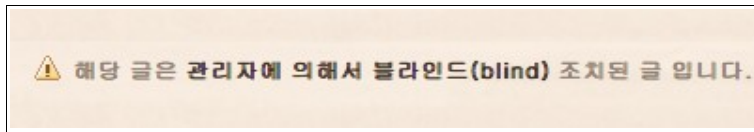
사무라의 조의 비분강계를 들으니 의문에 의문이 생겨난다. 정리해보자. 정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주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국가-공권력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 있는 강제적 행정조치가 과연 저러한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가의 문제 또한 제기 될 수 있다. 사실과 왜곡에 대한 포스트모던한 사무라의 조의 사유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사무라이 조의 일격이 담긴 장면이 있다면 사무라이 조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된다.

결국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무엇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위의 문제들을 제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야만 한다. 이는 단순히 사무라이 조의 간류도가 어느 정도의 실력인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무라이 조의 발언대로 아무도 때리지 않는 허공삼질도를 구사했다고 한다면 이를 알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에게도, 사무라이 조에게도 그날의 정보는 너무나도 필요하다.

그러나 대원들이 시민들에게 맞는 애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장봉을 휘두른 사무라이 조는, 이처럼 모두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해서도 봉(封)해 버린다. 이름하야 임시조치라는 30일짜리 장봉.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 사무라이 조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임시조치라는 새로운 장봉의 이름이 너무나도 생소하게 느끼실 강호의 제헌들을 위하여 임시조치가 무엇인지 이어서 적을까 한다.

'사무라이 조', '어청수'의 도피처 - 임시조치

한번 알아보자. 마음 아픈 연예계 뒷이야기도 아니고, 헤어진 옛 애인 근황도 아니다. 경찰복을 입고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국민을 대상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아보자는 것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알아보자는 것이다. 포탈 사이트에서 '사무라이 조'를 검색해 보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길 바란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뭐? 뭐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권리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포탈 등의 사업자는 삭제 또는 한 달간 해당 글을 블라인드 처리[임시조치]해야 한다. 권리침해가 공적기관에 의해 확인되면 삭제 또는 블라인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접수되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위의 블라인드 조치를 보게 하는 근거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임시조치 이후 어찌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포탈마다 정책도 다르다¹. 어쩔! 블라인드 조치 30일 이후 다음에서는 명예훼손 확인 시 삭제 / 명예훼손 여부 미 확인 시 복원을 한다. 네이버의 경우 30일 이내 게시자 재 게시 요청 없을시 삭제 / 재 게시 요청을 하면 형식 요건을 검토(누가? 어떻게?)하여 재게시 후 관련기관을 통해 당사자 간 해결을 유도한다.

업체	다음	네이버
삭제	관련기관의 명예훼손 결정문 확인될 경우	30일 이내 재 게시 요청 없을 경우
복구	명예훼손 여부 확인 못하는 경우	재 게시 요청 형식요건이 타당할 경우

〈다음과 네이버의 임시조치 이후 처리 과정〉

1 daum의 권리침해신고 처리 절차, naver의 권리침해신고 처리 절차, 2009년 5월 19일 11:31 접속

"올타꾸나!" 우리의 사무라이 조는 임시조치를 발동시켰다. '거기 포탈이잖? 저 사무라이 존데요. 저 곤봉으로 사람 안쳤거든요? 사람들이 한발자국도 못나가게 대원들로 막은 곳에서 1.5m짜리 장봉 휘두르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거 제 초상권이랑 그거랑 또 어찌구 해서 명예훼손 이에염. 언능 삭제 해주삼. 안그러면 ㅋ 님, ㅋ' (사무라이 조의 상관인 어청수 나리께서 동생분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에 대해 임시조치를 빠방하게 날리신 전례가 있다. 아마도 그는 그의 옛 상관에 대한 눈물겨운 사랑과 충성심으로 동일한 행위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에 대한 권리를 장봉으로 휘둘러 친 그가 이제는 표현의 자유마저도 임시조치에 빌붙어 억압하고 있다. 이쯤 되면 사무라이 조가 나쁜지 임시조치가 나쁜지 마구 뒤섞여 버린다. 사무라이 조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에서 대답 해 줄 것이다. 또는 고통 받으신 분들과 사무라이 조 사이에서 법정 공방으로 사실 여부가 판단 될 것이다. 그러나 임시조치의 해악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야기를 더 해야 하겠다.

명예훼손이라면 양자 간의 사건일 것이다. 글 게시자의 명예훼손 사실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아니면 포탈업자가 판사하게?!). 그러나 현행 법률은 명예훼손 사실 확인 없이도 글을 30일간이나 포탈의 임의대로 차단하게 할 수 있게 해 둔다. 반대로 글을 올린 사람은 '이 글에는 실제로 명예훼손의 요소가 없음'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어찌 밝히려는 건지 게시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다. 인터넷 환경의 분쟁에 대해서 국가는 민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 놓고 있지 않다. 이 어찌구니없는 임시조치의 막대한 힘을 빌어 사무라이 조는 각종 포탈에서 알바생도 좀체 하기 힘들다는 광역삭제신공을 구사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저 신고만으로 남의 글 30일간 차단하는 기막힌 노릇!

표현의 자유는 임시조치로 막을 수 없다능!

공적인 업무를 행하고, 그 대상이 국민인 경우에 있어서도 공무원이 명예훼손이라며 포탈에 끈지르고 막아버리면 권력에 대해 무엇이래 비판할 수 있을까? 더욱이 임시조치는 이번처럼 공권력 입장에서 그저 불편한 이야기들이 올라오면 '이거 권리침해임. 포탈님하 30일간 차단 ㅋ 해주삼 ㅋ' 하면 일단 30일간 게시물 차단이다. 그 사이에 논의는 식거나 언론을 통해 박제화 되어버린다.

더욱이 이번 사무라이 조 관련 임시조치들은 죄다 애꿎은 개인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언론사들이 사진 올리고 실명 밝히는 건 내버려두고, 명예훼손 없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밝히고 따지고 증명해야 하는 개인들의 입을 죄 틀어막고 있는 것. 치사하고 비겁하고 완전 뺄쓰같은 짓거리다. 그동안 정부기관이나 일부 언론사는 특정 게시물을 지목하지 않은 채 '내 이름이 들어가는 모든 명

예훼손성 게시물을 삭제해 달라' 는 식의 포괄적 요청을 남발해왔다² 하니 '임시조치야 말로 표현의 자유를 값싸고 편하게 눌러대는구나' 라고 좌절하며 표현의 자유를 포기할 남한반도의 인민이 아니었다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무라이 조의 소식은 임시조치건 뭐건 분노와 경악 속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낡은 제도는 사람들의 생각과 하고자 하는 바에 죄의 딱지를 붙인다.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됨을 두려워하기 보다는 더 신선한 공기를 찾아 다른 곳으로 접속했고 왼손은 거들 뿐.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지구 모퉁이에서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하면 나쁘다, 저거 하면 못됐다, 이래저래 같군다고 숨막혀하고 암담해 하는 시대는 지났다. 사람들은 그저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곳,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으로 떠나기만 하면 된다. 이를 제도로 어찌 옥죄려면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뉴 칼레도니아에 있는 어느 서버를 상대로 분노해야 하는 궁색한 상황에 직면해야 할 지도 모른다.

이 블로그가 막히면 저 블로그에서 터지고, 큰 게시판이 잘리면 작은 게시판에 붙이고, 남한에서 안되면 해외에서 주루루룩, 저 서버에서 **쌩쌩**, 열에 열 골 정보들이 각자 퍼져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넌출지고 방울져, 임시조치 크리뜨면 분노의 포스팅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트랙백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낙양 지가(洛陽紙價)[포스팅이 세상에 널리 퍼져 애독됨] 공유하던 기산 영수(箕山穎水)가 예 아니냐. EE!! (유산가 遊山歌, 비틀어놀이)

* 미디어스 2009년 5월 2일 [미디어운동場]에 실린 글입니다.

2 한겨레, 2009년 4월 28일, 2009년 5월 18일 16:42 접속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352232.html>

퍼블릭 도메인과 2차 창작

덩야핑(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식, 정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었고, 그것을 서로 이용하고 다시 경험하고 새로 노하우를 쌓아 발전시키는 작업들이 있었다. 모든 정신적 생산물이 공동의 것-퍼블릭 도메인이었다. 현대의 창작물 역시 영화든 책이든, 매체를 통한 창작은 이미 다른 창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지금의 저작권법도 이 점을 인지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한다며 소극적이거나 저작물이 사회적 생산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창작물이 한 사람의 노력에 더해 전/동시대 사회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결과물이라면 그에 대한 이용도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창작물에 고유성이 있게 마련이고 일정 기간 동안 저작권자는 마땅히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 체계는 과도하게 긴 기간(저자 사후 50년, 기업은 공표 후 50년)과 저작권자의 강력한 통제권으로 더 풍요로운 생산의 가능성, 특히 2차 창작의 가능성을 막고 있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원자폭탄이 터지며 버섯구름이 생기는 걸 느리게 보여주는 크로스로드라는 영화가 있다. 클래식 선율에 맞춘 다양한 앵글의 슬로우 모션을 보며 이런 끔찍한 살상의 부산물도 들여다보면 아름다울 수 있구나 놀랐고, 한편으로 이걸 어떻게 찍은 걸까 궁금해 했었다. 나중에야 미국의 국가기관이 발

행하는 모든 자료는 퍼블릭 도메인이고, 이 영화는 비키니섬에서 원자폭탄을 터뜨린 미군이 찍은 영상을 편집한 2차 창작물임을 알게 되었다.



▲ Crossroads, 1976 | 브루스 코너 / Bruce Conner

퍼블릭 도메인은 저작권이 포기되었거나 기간 만료로 소멸된 저작물의 상태를 말한다. 저작권자가 없으므로 허가나 저작권료 지불 없이 편집, 가공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생산, 배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퍼블릭 도메인을 이용한 저작물은 많이 있다. 매년 다양한 출판사가 다양한 버전의 법전을 출판한다. 가끔 갑작스레 외국 소설이 여러 출판사의 번역을 통해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저자 사후 50년이 되어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이다. 명화를 복제해서 팔거나 방안에 걸어두기도 하고, 구전민요나 작자미상의 노래로 음반을 녹음하기도 한다.

2차 창작의 장벽

하지만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자료란 한정적이고, 저자 사후 50년이라는 저작권 보호기간은 너무 긴데다, 저작권이 포기된 작품들은 드물고, 알기도 어렵다. 또 크로스로드처럼 직접 촬영하지 않은 필름을 편집해 새로운 의미를 가지는 영화(파운드 풋타지 found footage)를 만들 때 원하는 필름의 저작권자를 일일이 찾아 협상하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은 소모적이고 비효율적이다. 소자본, 비상업 영화라면 저작권료를 지불할 수 없어 작품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돈이 있어도 저작권자를 못 찾으면 무허가 이용으로 불법이라 포기해야 한다. 또 동시대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통제권에 따른 장벽이 더 높다.

모든 저작물은 가능한 한 제한 없이 생산에 직간접 참여한 사람들에게 향유되어야 한다. 꼭 경제적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즐길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또 널리 향유된다는 것은 어떤 위대한 저작자들의 글을 대다수의 저작능력이 없는 자들이 수동적으로 감사히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작품에 대한 재해석과 편집, 가공이라는 2차 창작도 마음껏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디까지 패러디로 용납될까 혹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 아닐까, 저작권자에게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닐까 별별 떨면서, 2차 창작은 저작권의 분명한 침해이나 은혜로운 원 창작자님의 자비 덕분에 감옥에 안 가도 된다고 기뻐해야 하는가? 저작권자의 생산물 역시 앞선 이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면서 2차 창작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

퍼블릭 도메인으로 가능한 것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L)를 만든 로렌스 레식이 주장하는 대로 저작권 기간을 줄이고,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자동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을 등록할 경우에만 발생하고, 나머지 창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의 영역으로 남기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에 더해 저작권의 내용 중 2차 창작 금지권리는 사라져야 한다. 명예훼손성 2차 창작이나 표절, 도작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2차 창작 금지 권리의 이유가 되긴 힘들다. 금지권이 있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문제이고, 다른 차원에서 원칙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다. 2차 창작의 자유와 표절, 명예훼손 등의 문제는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한 블로거가 다섯 살짜리 딸이 유행가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 당한 일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용 정지 등의 더 강력한 조치가, 좀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창작을 방해하고 문화를 저지, 쇠퇴시키는 방식이다. 통제권을 가진 저작권자의 선처를 바랄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은 잘못 됐다. 누구나 돈이 없어도, 원저작자의 허락(통제)이 없어도 마음껏 가공하고 살포할 수 있는, 더 많은 창작물이 공유되고 구석구석 새로운 창작물이 다시 태어나 풍요로워지는 미래상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생산물, 우리 모두의 즐거움. 다 같이 누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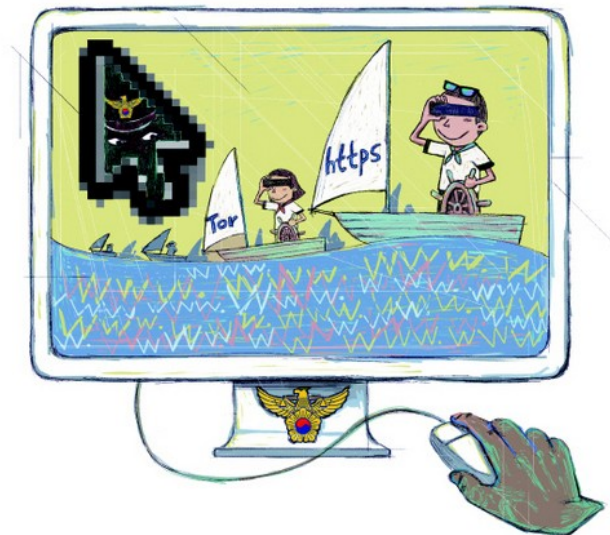
* 미디어스 2009년 7월 17일 [미디어운동場]에 실린 글입니다.

大監聽時代대감청시대, 넷트항해술!

김승욱(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ActOn 편집자 주 : 이 글은 한겨레21 2009년 7월 3일 제767호에 실린 글입니다. 원 저자의 의도에 따라 제목과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글이 나온 직후 몇 가지 변동사항들은 편집자 주로 처리했습니다. 편집자 주의 표기가 없는 한 글쓴이의 주입니다.

김찰이 <PD수첩> 김은희 작가의 전자우편을 7년 치나 뒤졌단다. 이야, 7년 치 전자우편을 한꺼번에 첨삭지도 해주신다니, 이거 어디 살벌해서 자유롭게 ‘네트’를 항해할 수 있겠어? 그것뿐만 아니라 정부 비판 글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걸려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하더라고. ‘민중 까기’가 기본이 돼버린 창피한 인터넷 세상이지만, 그래도 새는 구멍은 있기 마련이라고.



▲ 나를 숨기고 인터넷을 항해하는 법. 일러스트레이션 이우만

전자우편의 위대한 출애굽기[Exodus]

자자, 우선은 쓸 만한 전자우편 서비스부터 알아보자고.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자우편은 이미 검찰 나리께서 자기 안방처럼 드나드는 게 사실이니깐 일단 제쳐두고. 그렇다고 해외에 있는 건 모두 안전할까? 아직까지는 검찰의 ‘물리적’ 공격으로부터는 안전한 것 같아.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이 범죄 수사를 위해 협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만큼, 어떤 내용이나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지겠지! 자본주의같이 지구의 보편적 질서로 자리 잡은 시스템에 저항하는 내용이라면, 그들도 신속하게 협조에 들어갈지도 몰라.

이왕이면 ‘봉기넷’ (riseup.net)¹ 같은 해외 독립 네트워크를 이용해보는 것이 어떨까. 봉기넷은 지구 곳곳의 온갖 억압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트워크 자원을 제공하는 자율적인 조직이야. 봉기넷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익명은 기본이고 정보들도 신경 써서 보호하고 있지.

단, 비영리 네트워크기 때문에 제공되는 자원이 한정돼 있고, 아무에게나 계정을 주지도 않아. 계정을 받으려면 이미 봉기넷 계정이 있는 친구 두 명의 초대장을 받거나, 당신이 이 계정을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지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아마, 한국의 엄혹한 상황을 설명한다면, 전자우편 계정을 발급받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거야.

기본적인 암호화는 필수!

근데 서비스 제공자만 바꾸면 안전한 걸까? 이란에서는 정부가 모든 인터넷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최근에 인터넷 속도가 10배는 느려졌다고 하던데, 한국 정부도 그런 짓을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뭐 검찰은 여전히 물건 압수하듯이 통째로 열어보는 것을 선호할지 모르지만, 국정원쯤 되면 통신 회선을 직접 엿듣고 있을지도 모른다고². 따라서 기본적인 암호화는 필수야!

1 봉기넷(riseup.net) : 미국 시애틀에서 만들어진 전세계 회원들간의 자치공간이다. 자유 사회 창조를 목적으로 한다. 회원 간에 컴퓨터 리소스를 공유해 소통을 하며 자본이나 외부의 압력에 저항한다.

2 편집자 주 : 이 글이 작성 된 이후,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혐의자 등의 인터넷과 전자우편 등을 실시간으로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h21.hani.co.kr/arti/cover/cover_general/25658.html

우선 해외 전자우편이라도 SSL³을 이용해 통신의 전 과정을 암호화하는 구글메일(gmail)이 더 안전한 편⁴이야(붕기넷은 당연히 SSL). SSL은 어떻게 사용하냐고? 간단해. 주소창에 'http' 대신에 'https'⁵ 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는 끝! 그리고 야후나 핫메일은 전자우편 내용에 IP 주소를 포함한다고 하더라고. 구글은 이런 '뺨짓' 을 하지는 않으니,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 이제 설혹 국정원이 통신회선에 나쁜 짓을 해놔도 엿듣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100% 안전한 것은 아니지. 여전히 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에게 전자우편이 노출돼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전자우편 내용에 걸맞은 광고를 자동으로 붙여주는 구글의 첨단 기술을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역시 가장 안전한 것은 내 손으로 방법을 하는 것이지. 이런 날을 대비해 자유 소프트웨어 활동가들은 '그누 사생활 지킴이' (GnuPG)⁶라는 암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왔어. 하나의 비밀번호를 공유해야 하는 고전적인 암호화와는 다르게 공개키와 비밀키⁷로 분리돼 있어서, 비밀키는 나 말고는 아무도 알 필요가 없어. 이런 식이야. 내가 당신의 공개키를 입력해서 전자우편을 보내면 그 전자우편은 암호화가 돼서 아무나 읽을 수 없게 돼. 전자우편을 받은 당신은 비밀키를 입력한 뒤 열어서 읽어볼 수 있어. 이제 전자우편 함에는 뭘지 알아볼 수 없는 암호문만 가득하게 된다고. 검찰이 압수해간다면? 7년 치를 읽기 위해 1천 년은 기다려야 할걸? 아니면 내 머리로 압수해가든지.

집의 컴퓨터를 '토어'⁸ 에 제공할 수도 있지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네트에서의 항해도 모두 기록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야. 주민번호로

3 SSL : Secure Socket Layer의 약자. 넷스케이프사에서 개발한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
 4 편집자 주 : 이 글이 작성 된 이후 검찰은 구글 메일(gmail) 서비스를 이용한 이메일 통신 내용을 입수했다. 그러나 입수경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829006010>
 5 http와 https : 웹에서 문서(hypertext)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토콜(규약)로, https는 SSL을 이용해 문서를 암호화한다.
 6 그누 사생활 지킴이(GnuPG) : Gnu Privacy Guard의 약자로, 문서와 파일의 내용을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7 공개키와 비밀키 :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키의 종류. 공개키와 비밀키가 한 쌍이다. 공개키로 암호화한 것을 비밀키로 풀 수 있고, 반대로 가능하다. 공개키는 사용자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반면, 비밀키는 사용자만 알고 있어야 한다.
 8 토어(Tor) : The Onion Router의 약자로,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기업의 내부 활동, 국가의 보안 등을 위협하는 트래픽 분석이나 네트워크 감시로부터 당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https://torproject.org>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다.

로그인하지 않아도 IP 주소⁹와 함께 모든 것이 기록된다고. 왜 얼마 전에는 범죄 수사를 한답시고 경찰이 특정 검색어를 검색해본 사람들 명단을 포털에 요구하기도 했잖아. 최근에는 <자본론> 등 빨간책(?) 판매 동향까지 조사해 갔다는 걸. 그래서 이왕이면 IP 주소는 익명화해주는 센스가 필요해. 가장 강력하고 손쉬운 것은 ‘토어’ (Tor)라는 익명 네트워크야.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간단하게 설치 가능한데, 토어를 통해 네트에 접속하면 지구를 몇 바퀴 돌다가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서 접속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서 속도가 조금 느리기는 한데, 그래도 음지에서 추적하는 분들에게 “나 잡아봐라~” 라고 놀리는 기분은 괜찮은 편이야.



▲ ‘토어’ 활용을 돕기 위한 개념도(왼쪽)와 UCC 동영상(가운데), 독립 네트워크인 ‘봉기넷’의 초기 화면(오른쪽). 봉기넷의 전자우편은 외부의 손길로부터 안전한 편이다.

속도가 느린 것은 토어 네트워크가 아직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인데, 가능하다면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토어 네트워크를 위해 제공할 수 있어. 토어 네트워크도 봉기넷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거든. 이것도 간단해, 토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클릭 몇 번으로 설정만 해주면 된다고. 우리 집 인터넷 회선의 일부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제공할 수 있다니, 정말 멋지지 않아? 예를 들면, 멕시코의 사파티스타(무장 혁명단체)가 우리 집 컴퓨터를 통해 블로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해해, 경찰 아저씨들 진담 좀 빼겠는걸.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내부에서 무언가 고발하는 것도 골치 아픈 일이지. 얼마 전에는 국세청에서 어떤 공무원이 게시판에 글 올렸다고 중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고발 전문 사이트라고 할 만한 ‘위키리크스’ (Wikileaks)¹⁰가 운영되고 있어. 관타나모 수

9 IP 주소: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장치들이 서로를 인식하고 통신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번호. IP 주소를 이용해 접속자의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정보들과 조합해 접속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도 있다. 미네르바를 잡아갈 때도 사용됐다.

10 위키리크스(Wikileaks, <https://wikileaks.org>) :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추적을 막은 사이트로, 정부나 법

용소에서 인권침해나 티베트 유혈사태 등이 폭로되었던 사이트로 유명하지. 지난해 촛불시위 때 대한민국 경찰의 활약상이 위키리크스 첫 페이지를 장식하기도 했다고. 철저한 익명이 보장되고, 고발에 대한 지역단체들의 토론과 검증이 진행되며, 세계인들에게 문제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사이트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오히려 저들이야

휴, 그렇다고 100% 안전한 방법이나 기술이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기본적인 관심만으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그리고 여기에 소개된 방법들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어.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메신저, 문자메시지, 인터넷전화(VoIP)¹¹ 등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저들이야. 인터넷 때문에 대의정치가 위기래!¹² 그래, 위기지. 이제 우리가 정부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토론하고, 우리가 결정하거든. 이쯤 되면 궁지에 몰린 쥐새끼마냥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저들의 ‘생쑈’ 를 귀엽게 봐줘야 하지 않을까.

인, 종교 등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는 공간이다. 2006년 말에 문을 연 뒤 1년 만에 120만 개 이상의 데이터가 쌓였다.

11 인터넷전화(VoIP) : 기존에 사용되고 인터넷 프로토콜(IP:Internet Protocol)을 이용해 음성통화를 하는 것.

12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인터넷의 발달로 대의정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 2008년 7월 12일 국회 시정연설 中

악착같아라, 정부의 정보 폭식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우리나라 최대의 개인정보 보유자는 아마도 정부일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보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2만315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괄함)에서 1360종류의 개인정보 파일 9만2855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095개 기관에서 1078종류 1만510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배나 증가한 수치다.

‘DNA신원확인정보법’ 다시 입법예고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대체로 개인정보 보유자들은 더 많은 개인정보를 보유하려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속성 자체가 데이터가 많을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많아질수록 대상이 되는 개인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개인정보 수집은 더 많은 위협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한 번 수집된 정보는 유출 혹은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국제적인 개인정보 보호원칙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수집제한의 원칙’을 권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잇단 흉악 사건 범인 검거 때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힘을 발휘하자 각 지자체에는 CCTV 설치 확대 바람이 불고 있다. 하지만 줌이나 회전 기능을 제한하는 현행법을 어긴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의 방범용 CCTV 관제센터. 사진 한겨레 이종근 기자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일반적인 증가와 함께, 생체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968년부터 일정 연령 이상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 손가락 지문을 수집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전산화돼 관리되고 있다. 나아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정보 수집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4년 경찰청은 장기 미아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들과 미아 신고를 한 부모들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경찰과 검찰은 범죄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오랫동안 법안 마련을 추진해왔다. 2006년에 발의한 ‘유전자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결국 17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2009년 5월26일 법무부는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입법예고했다.

개인의 화상정보를 수집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도 급증하고 있다. 2002년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CCTV 5대를 시범 설치한 이래로, 공공기관들은 앞다퉈 CCTV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2008년 5월까지 약 13만 대의 CCTV가 공공기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8년 2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공공기관 CCTV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다수 공공기관 CCTV에 줌·회전 기능이 설치돼 있을 뿐 아니라 일부 CCTV는 당사자 모르게 음성 녹음까지 하는 등 관련 법규(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수사·정보기관이 개인 삶 전반 들여다볼 수도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공유’도 확대되고 있다. 2006년에 구축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현재 주민등록등(초)본, 납세 관련 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등 행정정보 71종을 공유하고 있다. 이 중 개인정보는 모두 44종이다. 정부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 수를 150종으로 확대하고, 공동이용 기관도 50개에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병원·학교·협회 등 민간기관도 공동이용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한다.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화하겠지만,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남용 위험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는 ‘주민등록번호’의 남용이다. 공공·민간 할 것 없이 주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를 개인 식별 수단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서로 다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식별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많을수록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정 서식의 47.1%, 공공기관 개인정보 파일의 80.4%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에서 이용되는 서식조차 48.2%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급증하고 있지만,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는 미흡한 상황이다. 2008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 70만여 건이 불법 유출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듯,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남용의 가능성에 항상 노출돼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대규모 유출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 파일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현황이 공개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 안전이나 범죄 수사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 파일의 공개는 이 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의 범죄·수사경력자료 등은 보유 현황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비공개 개인정보 파일의 경우 그 운영 및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에 대해 사회적 감시 자체가 어렵다.

특히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확대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 등 정부가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거래 내역, 교통카드를 통한 이동 경로, 인터넷 이용 내역, 공공 및 민간의 CCTV 기록, 통화 내용 등 영장만 있으면 개개인의 삶 전반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다. 최근에도 검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7년치 전자우편을 모조리 입수하지 않았는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통화 내용이나 위성항법장치(GPS)를 통한 개개인의 위치 정보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각종 법률	
현행법	
주민등록법	모든 국민에게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열 손가락 지문을 찍어 국가가 관리,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해지는 가장 원초적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CCTV 등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파기 등을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관리·파기 등을 규정
통신비밀보호법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통한 대화의 검열·감청·녹음 금지, 불법 검열에 의한 전기통신 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 금지,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회사 등의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제한 규정
의료법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의료 기록 유출·비밀 누설 금지
제·개정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든 사업자에게 감청설비 보유를 의무화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객의 통화 내역 등을 제공하도록 하며, 1년 이내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보관하도록 해 인권침해 우려
DNA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중범죄자의 DNA 정보를 의무적으로 채취해 보관하도록 하는 법률인 DNA 분석 없이도 법인 특징이 가능한 김금·절도 같은 가벼운 범죄까지 대상에 넣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DNA 시료 채취를 허용하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등 반인권적이라는 비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특별법이 아닌 일반법 형태로 개인의 정보보호를 폭넓게 규정함

▲ 개인정보와 관련한 각종 법률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라

비록 정부가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거나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면 개인정보의 유출과 남용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어쩌면 더 큰 위험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기관이 될 것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개인정보 전담기구가 개인정보 보호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인권·사회단체들도 독립성·전문성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해왔다.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맡기느니,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한겨레21 2009년 6월 26일 제766호에 실린 글입니다.

한없이 불투명에 가까운 ‘감청의 투명화’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타인의 삶〉이라는 독일 영화가 있다. 주인공은 옛 동독의 비밀경찰이다. 그는 사상이 불온한 것으로 의심스러운 예술가 부부를 ‘공무로서’ 감청하는데, 그가 감청 대상에 깊이 공감하게 되 나머지 그들의 삶에 개입한다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다. 영화는 재미있었지만, 비밀경찰과 감청은 참으로 끔찍했다. 비밀경찰은 정권과 체제의 안정을 위해 사상 감시를 업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경찰’ 혹은 ‘사상경찰’로 불리기도 한다. 감청은 기본적으로 행위보다는 생각과 말을 감시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비밀경찰의 주요 업무가 감청이었을 것이다.



▲ 영화 〈타인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통신을 감청하고 있는 정보요원의 모습.

감청의 98.5%를 국정원에서

현실에서도 감청이 일반 범죄수사와 관련해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 감청은 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감청 통계에서도 최대 집행기관은 국가정보원으로 나타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에는 전체 9004건의 감청 가운데 8867건, 무려 98.5%를 국가정보원이 집행했다.

국가안보를 위해 정보기관의 감청은 빼놓을 수 없는 업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비밀경찰과 다르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에 권한과 업무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에 권력이 통제되지 않는 정보기관은 법 위의 법, 무시무시한 비밀경찰과 다를 바 없어진다.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력이 제대로 통제되고 있는가?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보듯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기관의 불법 감청을 통제하는 데 무력했다. 불법 감청이 드러난 뒤 사후적인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X파일이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것이 2005년 7월인데, 그 이후 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 관련 규정들은 개정된 적이 없다. 똑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해도 말릴 재간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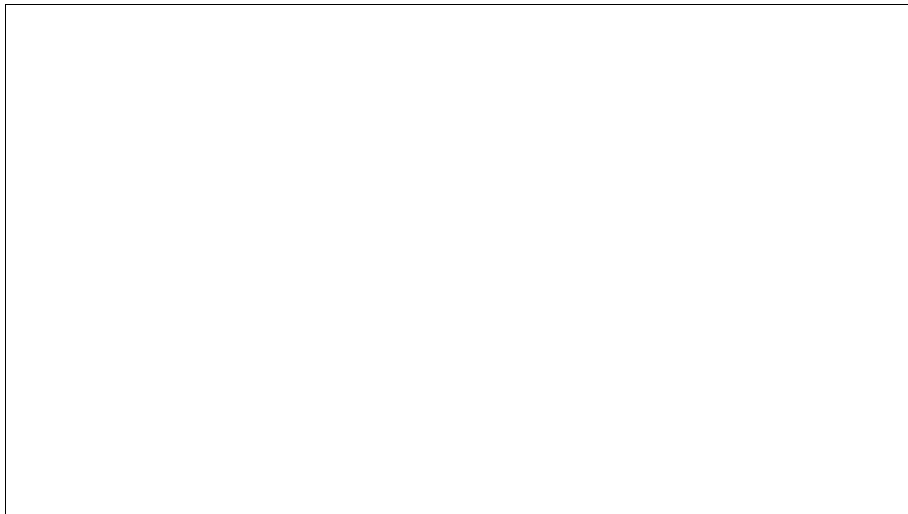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는 ‘영장주의’의 예외 조항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감청할 때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외국인 감청은 예외로 두었다. 테러범이 있을지 모르니 외국인 감청 정도는 정보기관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할까? 하지만 외국인에 대해 내국인과 차별해 마음대로 감청한다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대상이 정말 외국인인지 아닌지, 감청이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것이다. 법원도, 국회도 모른다. 감청하기 전에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급하면 나중에 받아도 된다. 감청을 36시간 이내에 끝내면 아예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 정보기관은 감청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된다. 국가정보원의 핵심 감청 기능에 대해 사전적으로든 사후적으로든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이 없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전화 감청법’으로 널리 알려진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모든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통화내용에 대한 감청도 시작된다. (휴대전화 내용 감청은 CAS나 R2 등의 장비를 통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현재 정보기관들은 공식적으로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으로 선보일 새로운 통신수단까지도 모두 통신사업자의 감청장비를 통해 감청할 수 있게 된다. 이제까지 수사·정보기관이 직접 감청장비에 신경 쓰면서 겪어온 번거로움과 수고를 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이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에서 “이는 통신서비스 기술을 감청에 적합하게 개발하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 이라며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 전화, 화상 전화, 인터넷 메신저, 인터넷 채팅 등 사실상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합법적 감청이 가능해질 수 있다” 고 반대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 개정안의 주요한 명목으로 ‘감청의 투명화’ 를 든다. 앞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감청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수사기관은 직접 감청 장비를 운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예외로 뒀다. 국정원이 외국인을 감청하는 경우 직접 감청 장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위에서 보았듯이 외국인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가장 불투명한 영역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투명한 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의 가장 불투명한 부분에서 가장 불투명한 감청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CAS나 R2, 아니 더 지독한 감청장비가 다시 등장하지 말란 법이 없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 문제점

개정안은 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로그인 · 착발신 내역 등)를 1년 동안 반드시 보관하도록 새로이 강제한다.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다. 이 경우에도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통신의 비밀’은 기본권

헌법 정신대로라면 감청은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통신의 비밀’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수사 목적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법률에 따라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통신비밀보호법도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감청을 허용한다.

그런데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정안이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부실하다. 감청 통제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력을 제어하는 데 핵심을 두어야 한다. 공식적인 수치만으로도 98.5%를 집행하는 기관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가정보원은 특별한 관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브러더’는 강압에 의한 독재권력이었다. 이 소설에서는 고문과 같은 물리적 폭력도 등장하지만, ‘감시’야말로 감시하는 사람도, 감시당하는 사람도 인간다움을 잃게 만드는 힘이었다. 감시당하지 않는 순간에도 감시당할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위축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감시는, 가장 반민주적이고 비인간적인 통치 기법이다. 우리 통신비밀보호법은 빅브러더와 얼마나 멀리 있는가.

*한겨레21 2009년 9월 4일 제776호에 실린 글입니다.

타미플루 강제실시를 허하라

홍지(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정보공유연대IPLeft 운영위원)

현재까지 신종 인플루엔자(H1N1·이하 신종 플루)의 보편적인 치료제는 스위스계 제약회사 로슈가 생산·판매를 독점하는 오셀타미비르(Osetamivir), 즉 ‘타미플루’ (Tamiflu)다. 2004년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는 백신이 광범위하게 보급되기 전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타미플루가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에 맞서는 유일한 방어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에 와서는 더욱 분명해진 문제점은 세계적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의 비축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 의약품 특허는 국가 간 치료의 양극화, 국가 내 치료의 양극화를 불러온다. 스위스 로슈사에서 생산해 국내에 수입한 타미플루를 관계자가 점검하고 있다. 사진 연합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 ?

2004년 AI(조류 인플루엔자 · H5N1)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인구 대비 최소 20%’ (약 12억 명)에 해당하는 분량의 치료제 확보를 권고했다. 덕분에 로슈는 2005년 1조 달러의 이득을 챙겼으나, 타미플루 가격은 1인분에 60달러에 이르면서 국제적인 비난 여론에 직면했다. 게다가 로슈가 공장을 완전 가동해도 앞으로 10년이 걸려야 WHO의 권장량에 맞출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년이 지난 현재 타미플루의 수요와 공급 간극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선진국이 타미플루를 경쟁적으로 확보하면서,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국가의 수요까지 감당할 분량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로슈의 타미플루 연간 생산량은 고작해야 4억 명의 인구만이 복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 결과 현재 타미플루는 최고 4~5배 폭등한 가격에 팔리기도 하며, 남미 국가에서는 1인분에 90달러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10월까지 확보할 수 있는 신종 플루 치료제는 500만 명분이나, 이 중 현재 비축한 220만 명분이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었다.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한 것이다. 10월부터 신종 플루가 본격적인 대유행을 할 것이라는 예측 속에 타미플루에 대한 정부의 ‘강제실시’(Compulsory License) 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강제실시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특허받은 발명품을 타인이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물론 특허권자에 대한 일정한 보상이 있고, 이후 특허권자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정지되지도 않는다. ‘실시’란 특허발명의 이용, 즉 생산·판매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특허법이 특허권자 보호와 함께 사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기에, 강제실시는 특허 제도의 필수적인 장치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31조, 그리고 우리나라 특허법 제106조와 107조에서도 강제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 한 언론 보도에서 인용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의 “(강제실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는 일”이라는 발언은 황당함을 넘어 우습기까지 하다.

특허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긴급사태나 기타 극도의 위기 상황, 혹은 공공의 비영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다. 질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높은 의약품 가격으로, 혹은 공급이 불충분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우려가 큰 지금이 대표적인 경우다. 실제로도 강제 실시 요구가 빗발치는 대상이 바로 의약품이다.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등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대다수 발명품들은 보통 수백에서 수천 개의 특허발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의약품은 원료가 되는 물질이 그것이 가진 특허의 전부이기 때문에, 특허권자인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 등 보급 전 과정에 걸치는 독점이 가능하다. 반면, 복제도 쉽기 때문에 독점이 깨질 경우 가격이 독점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크게 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전세계 시장을 독점하며 천문학적 이익을 얻는 제약회사가 강제실시 이야기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다.

미국, 가장 많이 강제실시를 하는 나라

타미플루 부족 사태에서 보듯, 특허권을 가진 제약회사가 생산을 독점한 상황에서 약의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 제약회사는 구매할 능력이 있는 국가만을 대상으로 약을 공급한다. 이로 인해 질병이 부유한 사람들은 피해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공격하는 치료의 ‘부익빈 빈익부’ 현상이 발생한다.

로슈의 한국 지사장인 울스 플루어키거는 이를 잘 설명해준 인물이다. 지난해 7월, 시판 허가 이후 4년째 판매되지 않는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Fuzeon)의 국내 공급을 요구하는 환자들에게 그는 “의약품 공급에 관한 문제는 해당 국가 국민이 해당 의약품을 구매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1987년 최초의 에이즈 치료제인 지도부딘(AZT) 개발 이후 수십 종의 에이즈 치료제가 개발돼, 현재 선진국에서는 에이즈를 당뇨와 같은 만성 질환처럼 다스리고 있음에도, 매년 2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들의 대다수가 아프리카에 사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약값을 지급할 능력이 되는 나라 역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기는 마찬가지다. 2008년 1월31일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보고에 따르면, 2007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6%에 이르는 총 의료비용은 현재 추세대로 증가하면 2082년 GDP의 100%에 이르게 된다. 충격적인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특허 의약품의 높은 가격을 꼽았다. 제약회사의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이 1년씩 증가할 때마다 미국인들이 내야 하는 의료비용은 60억달러에 이른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은 특별한 요건을 제한하지 않고 폭넓은 경우에 강제실시를 인정함으로써 의약품 공급을 늘리고 가격을 낮춘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강제실시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다. 미국은 9·11 사태 이후 탄저병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2001년 독일의 바이엘사가 공급하는 치료제인 시프로(Cipro)에 대해 강제실시를 고려했고, 결국 바이엘사가 시프로의 가격을 낮춘 바 있다.

발동되면 한두 달 뒤 약의 출시 가능해

1953년 미국의 세균학자 조나스 솔크 박사는 소아마비 백신을 발명했다. 1960년대 이후 소아마비 발병 환자 수는 획기적으로 줄었으며, 우리나라는 2000년 10월 소아마비의 종식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백신의 빠른 보급으로 소아마비가 박멸에 이르게 된 데에는 솔크 박사의 공로가 크다. 그는 백신 발명 이후 여러 제약회사로부터 특허를 넘겨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누가 백신의 특허를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솔크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들이라고나 할까요. 특허라는 건 없어요. 태양을 특허 낼 수 있습니까?”

타미플루 부족 현상은 의약품의 공급에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만성적인 의약품 부족 현상과 가격 폭리 정책을 낳는 의약품 독점 공급이 과연 유효하고 적절한 방식인지 되물게 한다. 강제실시는 그 대답 중 하나다. 국내 제약회사 2~3곳이 이미 필요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이며, 강제실시가 발동된다면 바로 한두 달 뒤에 타미플루와 같은 약의 출시가 가능하다.

강제실시가 후진국에서나 쓰는 충격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이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일각의 우려는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근거 없는 소리다. 오히려 강제실시를 바라보는 정부 관계자들과 몇몇 국회의원들의 사고방식이 후진적이고 충격적이며 원시적이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다.

*한겨레21 2009년 9월 4일 제776호에 실린 글입니다.

ella 4hacke bright igoomy ikd01 next421 **positro**

nenmai **wangkm** twofus shincl eeseob_n mari supul2

SHHA kambe anggoo10 **peacepia** Hserin tae21 may

jinbo13 delphy action horong arcase meiste rainme

young82 redgan damon abird33 seapear underis **anbada01**

angle tsn eejoon **homin99** nojisimi

이 분들의 뒤를 이어 후원회원이 되고싶으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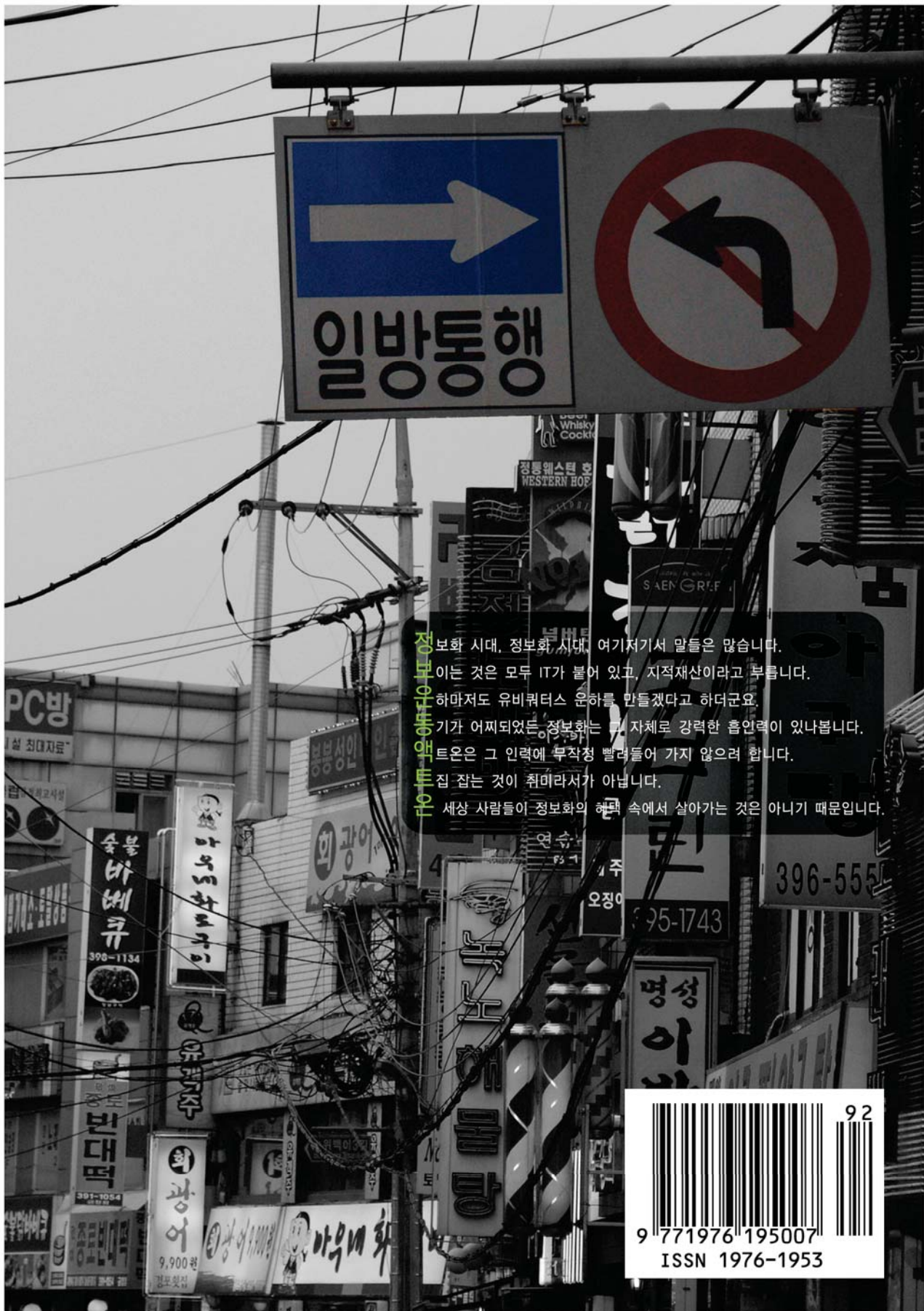
쌀을 주셔도 되고,
반찬을 주셔도 됩니다.

쓰지 않는 이불을 주셔도 되고, 알콜(?)을 주셔도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으랏차차 기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를 자랑하는 **메일링리스
트와 호스팅계정**, 즐겁고 풍성한 내용을 담은 **계간지 <액
트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독립 영화관 할
인 및 무료 입장**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http://center.jinbo.net/member/new.php> 에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은행 057-036794-04-019
예금주 진보네트웍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여기저기서 말들은 많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IT가 붙어 있고, 지적재산이라고 부릅니다.
하마저도 유비쿼터스 운하를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기계가 어찌되었든, 정보화는 그 자체로 강력한 흡인력이 있습니다.
트론은 그 인력에 무작정 빨려들어 가지 않으려 합니다.
집 잡는 것이 취미라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보화의 해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92



9 771976 195007
ISSN 1976-1953